

月刊 法 曹

2002年 12月號

目 次

◆ 特輯：行政法上 義務履行 確保手段 檢討 ◆

○ 課徵金制度 意義 法的 性格	金 弘 大	5
○ 行政秩序罰 體系	柳 至 泰	50
○ 代執行制度 理論 實務	韓 堅 愚	78
○ 行政刑罰 一考	崔 峰 碩	109
○ 現行 犯則金制度 改善方案 檢討	張 校 湜	144

研究論文

○ 國際裁判管轄 實務運營 小考	柳 英 日	178
○ 共同名義 假登記權者가 賣買豫約 完結 賣買目的物 本登記 履行 訴 形態	尹 瓊	214
○ 專門職 會社形態 研究	朴 庠 根	236

實務研究

○ 一任賣買 證券會社 損害賠償責任	金 鍾 昊	272
-------------------------	-------	-----

紀行文

○	廉 元 燮	294
---------	-------	-----

詩

○ 가	金 容 燮	315
○ 가	朴 正 皓	316
○ 가	李 補 淵	318

會員動靜

○ 開業辯護士·登錄去務士(名單)	編 纂 室	319
-------------------------	-------	-----

BUP JO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December 2002

CONTENTS

Volume 555

Articles

- Legal Characterization of
the Penalty Surcharge*Kim, Hong-Dae* / 5
- System der Ordnungsstrafe*Ryu, Jee-Tai* / 50
- L'execution Par Voie Administrative En
Droit Administratif Coreen*Han, Kyun-Woo* / 78
- Eine versuchsweise Vntersuchung über
die Verwaltungsstrafe *Choi, Bong-Seok* / 109
- Zu den Reformsmöglichkeiten
der bestehenden Bußgeldsanktion*Jang, Kyo-Sik* / 144
- A Study on the Court Practice on International
Jurisdiction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 with special references to the recently
revised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and the Draft of the Hague
Judgments Convention -*Liew, Young-Hill* / 178
- Forderung auf Erfüllung der
endgültigen Eintragung*Yun, Kyeong* / 214
- Professional Corporations*Park, Sang-Geun* / 236

Legal Practice Study

- The Stock Company's Liability
on the Discretionary Transaction*Kim, Jong-Ho* / 272
-

課徵金制度 意義 法的 性格

前 法制處長 金 弘 大

. 行政制裁 意義

1. 序

가. 概 說

美·佛

가

가

,

1

가

.

.

가

.

,

,

가 ,

가
가 가

가 .

가 ,

. 法的 根據

가

37

가 .

,
,

(92)

2. 傳統的 行政制裁手段 限界

가. 概 說

60

가

가

가

· 傳統的 制裁手段 問題點 限界

가

가 3 가 , 가 가 가 가 가 . 3

가 가 가 가 가 가 . 1)

1) 「

가

.....
3

가

가

가

가

가

()

가

가

가

가

....」(朴鉉旻, 「行政法上 義務確保 手段」, 現代公法 理論, p 356)

가 .

가

8

가

가

가

가

가

가

3

가 가

가

· 課徵金制度 意義 法的 性格

1. 課徵金制度 意義

가. 課徵金 概念

1980

가

2002 6 79

가

(1) 朴鉞沂

「

가

」

(1980.12.31. 法律 3320)

가

1

(1981.12.31. 法律 3513)

· 가

· 가

· ,

2)

(2) 金東熙

「

」

· 가

가

3)

(3) 李尙圭

2) . (上) p 618. 1997 刊

3) . 行政法 . p 406. 1999. 刊

가

.4)

(4) 金鎔珍

(1981.12.31) 31 2

,

.

.

가

,

가

.

가 가

,

가

,

.

,

31 2 4

.

.5)

4) . 新行政法論(上). p 437. 1986. 刊

金錢制裁金 區分

(1) 罰金・科料

가
가

(2) 過怠料

가
가

5) 「
」.1983. p 52

6)

7)

가

8)

(97 ,
 635 , 130),
 (273 , 282), (82
 2 , 21), (83) .

가

가

가

9)

6) . 前掲書. p 433

7) 大法院 判例, 1969.7.29 , 69 400

8) (20 , 130)

9) . 前掲書. p 595

가 .

.10)

(278).

가 .11)

가

가

10) (가) ,

11) 80 (1983.11. 「法制」).

가

(6) 賦課金

12)

13)

(7) 執行罰

가

3

12) . 前掲論文. p 17.

13)

가

가 .14)

日政時

가 1991

.15)

2. 課徵金制度 立法現況 分析

가. 課徵金 導入現況

가 1980 2002 6 79

가 14 가 (12),

(11), (10), (6), (6)

([1]).

93 가 가 1 10

(1 6), (1 5), (1 4),

(4 12), (3 6)

14) . 前掲書. p 559.

15) , 1 4 2

(10), (9)
, (5), , ,
,

課徴金制度 生成分野

3. 立法模型 分析

가. 1

16) 1981. 12. 31.
31 2

16) 1980.12.31.

1

가

66

(同旨:

. 1993. p. 50).

가
2002 6

가
가

500

가

가

,17)

가

가

,18)

17)

,가 ,

18)

2002 6 , [2] 1-1
27

가 「 가
」 1-1
1-2 [3]
25

가 「 가 가
」 91 3 8
(1-2
) 10
1-3 [4]
14
2

1980.12.31. 3320 「
」 가
가
6 「 」 가
가 가 가
가

2 가 ([5]). 2

. 3

1

.19)

3 [6] 11

4. 課徵金 法的 性格

가. 概 說

2

3

가

論外

1

. 課徵金 法的 性格

가 가

19)

(1) 營業停止期間中 發生 不當利得 還收性格

1981 1. 1.

가

가

가

가 20)

가

500

21)

20)

21)

가

가

22)

가

23)

22) 2

「 」

가
가

(前掲書. p 38)

23) 가

가

가

가

(

가

가

(2) 過怠料

24)

가

가

25)

가

26)

24) 註4)

25)

가

가

26)

(. 前掲書. p 618 註1))

가
, 가가

,

가

.

.

. 27)

,

.

가

,

가

가

.

.28)

27)

가

(

,

가).
28)

(第 1 節 2. (2))

34)

가 (119 2) 가
 가 29)
 가 3

가 30)

가 31)

29) 註23)
 30)

31) ○ (1981.12.31.) 가 가 가
 2 가 가 가
 가 가
 가 (前掲論文.1983
 . p 59.)
 ○ 가 79 가 가

34)

가

35)

가

34)

가

35)

100 200

1

課徴金制度

問題點

가 20

79

가 가

가

가 가

1. 賦課對象事業 選定要件

1981

1-2

○ () 「 가 ○○ 가
」 . 가

가 . 가
가 가
, 36)

(1-3)

2. 規定方式

[2] 79 . 가
가 가 가
가 가 가 37)

36) 「 가 가
가 」 (. 前掲書. p 119).

, 1 . . .
1

, 가
.

3. 罰則規結果

가 가

가

37)

5

. . .

.

. . . 「 가
」

가

가

3

(. . . , , . 1991. p 373).

가

38)

38) ○ 朴鈞炢. .
○ . 前掲書. p 138
○ 「

39)

12 . pp 102 103

. 가 . 가
. 가 .

. 가 .
가 ,

, 가

가

가 가

, 가 가

가
가

가 가

1

가

.」, (曹正燦, 「課徵金制度

小考」, 法制 198 , 87.6.30. 가.

39)

가

가 (

)

. 가

(議野弼生. 「

」 p

258)

가 ,
가
가 가
가

4. 課徴金 特殊用途 使用

(가)가
가
가

가 40)

()

40) , ,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

가

가

가

1980

가

79

20

가

79

1
3가

2

3

가

가

가

가

(1-2)

,

가

가

가

,
가

[1]

o 79

(6)	52 2
	12
	64
	58
	65 3
	206 11
(1)	5 · 10 · 14
(1)	17 · 68
(5)	35
	21
	19
	38
	· 40
(4)	가 83
	21
	24
	가 28
(14)	가 9 2
	39
	가 10
	7
	11
	14
	21
	12
	가 8 2
	15
	28
	12
	10
	15

(4)		24	
		64	
		13	
		73	
(12)	25	2	
		46	
		85	
		67	
		65	
	71	3	
		57	
		29	
	53	2	
		77	
		30	
	22		
(10)		14	
		14	
	20	2	
		43	
		20	2
	14	.	
		21	
	.	37	
		29	
	12		
(11)		82	
	19	2	
	.	16	2
		79	
		74	
	24		
		39	2
		16	
	131		
		51	
	19		

(4)	91 2
	33
	27 6
	21
(6)	가 35
	17 · 22 · 28 ·
	34 2
	34
	· 9
	25 3
44	
(1)	49

[2]

	()							
12	(1-1)		()	2			(‘)	
58 1	"			1				
2			()	1				
3				5				
68	"		()	5				
40	"		()	3			(‘)	○
24	"		()	1				
가 9 2	"		(,)	2				
39	"		()	3				
가 10	"		()	3			,	
7	"		(,)	1				
14 1 , 2 , 3	"		()	2 (1) , (2 (3)			,	○
21	"		(,)	1				
가 8 2	"		(,)	2				
25 2	"		()	3				

	()							
65	"		()	1			,	○
71 3	"		()	5	3 -		,	
53 2	"		()	5	3		,	
77	"		()	10			(,)	
22	"		()	5				
43	"		()	5				○
24	"		()	3				
82 1	"		()	5			,	
82 2				30/100 5			,	
39 2	"		()	1				
16	"		()	3				
91 2	"		(,)	1			,	○
21	"		(,)	3				
34	"		()	5				
44	"		()	5				

[3]

	()							
17	가 (1-2)		()	5				
35	"		()	5			,	
21	"		()	3	3			
19	"		()	1				○
가 83	"		()	1 () 1 ()			,	
가 28	"		()	1				
21	"		()	1			,	
15	"		()	2				
28	"		()	1				
12	"		()	5				
15	"		()	2			,	
24	"		()	10				
64	"		()	10				
13	"		()	2				
73	"		(;)	3				
30	"		()	3				

	()							
37	"		()	2				○
29	"	"	"	1		"	'	○
19 2	"	"	"	2		"	'	○
16 2	"	"	"	2		"		
79	"	"	"	5		"	'	○
74	"	"	"	1		"	'	
131	"	"	"	50		"		
51	"	"	"	1		"	'	
19	"	"	"	2		"		○
27 6	"	"	"	5		"		

[4]

	()							
52 2	가 (1-3)		()	5 (1) (1)				
21	가 (1-3)	"	"	2	3			
46	가 가 가 (1-3)	"	"	1	"			,
85	가		"					,
67	(1-3)			5				,
57	가 가 (1-3)		"	5	"			,
29	가 (1-3)	"	"					,
14	가 , 가 ,							
14	가	"	"	3				0
14	가 (1-3)							
20 2	"	"	"	2				0
20 2	"	"	"	3				0
21	"	"	"	5				0
33	(1-3)	"	"	2				

[5]

	()							
10	가 가 가 (2)			가 가				
12	(2)	"	"	(2 10) ())-				○

[6]

	()							
64	(3)			10/100				
65 3	"	"	"	10 /100				
206 11	"	"	"	가 3/100 20				
5 , 10 , 14	"	"	"	가 30/100				
38	"	"	"	2			,	○
11	"	"	"	2/100 5				
가 35	"	"	"	2/100				
17 , 22 28 , 34 2	"	"	"	가 10/100 5				
.	"	"	"	2/100 5				
9	"	"	"	2				
25 3	"	"	"	2				
49	"	"	"	1			,	○

: , , , , ,
 , , ,

行政秩序罰 體系

高麗大學校 法科大學 教授·法博 柳 至 泰

(Verwaltungsunrecht)

行政不法

가

가

.1)

行政不法

1) 柳至泰, , 6 , 2002, 284

가 , 가
 .
 .
 가 ,
 가 .
 가 .

· 行政秩序罰 論議 體系

1.

가.

가
 가
 가 . (Rechtseinheit)
 ,
 가 2)
 , 가

2) Klapstein, Rechtseinheit und Rechtsvielfalt im Verwaltungsrecht, 1994, S.2ff.

가

가

()

(,)

가

가

가

가

가

가

3)

2.

制裁法(Sanktionsrecht)

가 , , 가 ,
가 , , .4)

原理(Prinzip)

5) . 原理

3) Vgl. Wolff/Bachof/Stober, Verwaltungsrecht I, 1999, §21 Rdnrn.10,11;
Verwaltungsrecht II, 2000, §65 Rdnr.2 ; ()

가 .
4) Wolff/Bachof/Stober, Verwaltungsrecht II, 2000, §65 Rdnr.3

5) (Effizienz) 原理(Rechtsprinzip) 가

, , 가
,
,6)
가
가 가 . 原理
原理 가

1.

가 가 , 가
,
가
,
.

.7)

가 , Hoffmann-Riem/Schmidt-Aßmann(Hrsg.), Effizienz als Herausforderung an das Verwaltungsrecht, 1998, S.19ff.

6) Hoffmann-Riem/Schmidt-Aßmann(Hrsg.), Effizienz als Herausforderung an das Verwaltungsrecht, 1998, S.268f.

7) Wolff/Bachof/ Stober, Verwaltungsrecht II, 2000, §65 Rdnr.39

()

가

가

.8)

2.

가

가

.9)

가

가

.10)

8) 大判 1990.10.20. 90 699: 56 2

가

9) 柳至泰, 6, 2002, 283

10) 小早川光郎, 行政法(上), 1999, 247

11)

가가¹²⁾

11) 1997.8.21. 93 51:

)

(
가,

가,

가 ,

가

가

가

7 1

가

,

1

500

22

3 가

,

.

,

, “

7 1

.

22 3 가

,

37 2

”

12) 1997.4.24. 95 90:

,

35 1

2

36

1

1

가

8

가

,

.13)

가

.14)

13) 1998.5.28. 96 83:

가

14)

2002. 6. 27. 2000 642, 2001 12() 【
 15 】
 : 38 2 5 (5)
 1 1,000

가

가

(가 1998 7,277 , 1999 5,296
 , 2000 3/4 2,295 가)

가

(22 2 3)

가 “1 1,000 ”

, 가

(4) :

,

,

가

(22 2 3),

3 (7

7). 3

() ,

()

가

가

가

(20 1), , .

(130 12).

,
가 ,
가 .

3.

가.

가
然犯
가
法定犯¹⁵⁾
가
自

가 ,
가 .

15)

, 2001, 126

가

가

16)

17)

16) 1998.5.28. 96 83:
가

가
11 1 2

1

17) 大判 1996. 4. 12. 96 158:

가 가 가

가

가

, 가

가

가

가

.18)

1994.6.30.92 38: 13 1 “ ”
 가가 , “
 ” 가
 , 가가
 . 54 1
 가 ,
 56 2 1
 ,
 . , 가 가
 ,
 가 , 가
 가 가 가 가
 . 54 1
 가 56 2 1
 13 1

18) 大判 1996. 4. 12. 96 158:

가 가 가 ,
 가
 , 가 , 가
 가 가 , 가
 가

大判 1989.6.13, 88 1983:

.19)

4.

가

가.

(),

가

19) 大判 2000. 8. 24, 2000 1350:

78)

(249) (

, 96 1 “

가

5

”

가

5

가
가

96

.20)

.21)

가 ,
,

(

83),

()

.22)

가

,
(117).

가

가

20) , , 2001.1, 71
9) , 가
가

21) 小早川光郎, 行政法(上), 1999, 247 ; 藤田宙靖, 行政法 I, 1993,
261

22) , , 2002.1, 84

(130 2)

(20 1).

, 가

가

, ‘ ,

가

1.

23)

가

가

(

130

3 , 131 5),

2.

가

가

前者

23)

1998.5.28. 96

83:

가

37

2

가

가

.24)

後者

. 가 ,
(),

가

.25)

.26)

24) Wolff/Bachof/Stober, Verwaltungsrecht II, 2000, §65 Rdnr.10

25) 大判 2000.5.26. 98 5972:

가 . 가
가

가

大判 1994.8.26. 94 6949:

가

3.

가

가

27)

가

,

가

28)

29)

26)

가

(, , 1997.12, 384)

()

27) 大判 1992.11.13. 92 1285: 130 2

1 1 5 , 25 1 8

가

가

28) 藤田宙晴, 行政法 I, 262

가 .

4.

가 .

,

.30)

(가

) 가가 .

.

1.

29) : 23 (.) 22
 . 11 (.)
 23 1
 .
 1 10

24 (): 11 4

30) 78 5

31)

가 32)

2.

가.

247

250 가

(247),

(248 2).

가

가

가 .

가

(

31) 78 4

32) 130 3 , 131 4 , 5 , 6

),

,33)

가

가

가

가

,34)

가

33) 1998.9.30. 98 18

34) 大判 1998. 12. 23. 98 2866

(249 1).

(2).

(1)

(248 3)³⁵⁾,

23

414 1

가 1

1 36)

35) : 23 ()

248 ()

414 () 가 1

1

36) 1998.8.27. 97 17(248 3): 23

가

248 3 23

414 1

1

()

248 3

(2)

가

(248 1 3).

1

(250).

가

.37)

가

가

가

가

37) 1995. 5. 24. 94 52 ()

가 (가)
()
가

가가

3.

(130 3 , 131 5).
가 가

1. :

가 가 ,

2. 1

가

가

가가

3. 2

가
가

가 가

가

가

가

4. 3

가

가

가

가 .
,
가 .
(38)
가 .
가 ,
-
가 -
- 가 -
가 .
(
) ,
,
가 .
가 .

38) 가
가 .

代執行制度 理論 實務

延世大學校 法科大學 教授·法博 韓 堅 愚

가

3 가

1)

가

大型化

國民資產 效率的 活用

行政力 費用面

가

零細 無許可建築物

1) 1954 3 18 314

抵抗 , 代執行費用 徵收
 가 . ' ,
 가 合法化
 . 公害防止施設物 高度 專門
 技術性 , 緊急性
 .
 機能
 弱化 ,

· 代執行 意義

1. 概念

代執行 代替的 作為義
 務 行政廳 가
 (自己執行) 第3者
 (他者執行) 2)
 法原 行政代執行法 , (77) .
 (69 , 74) . (46) .

2) 自己執行 他者執行 , 他者執行
 直接強制
 ,
 가 ().

3)

2. 他者執行 法律關係

가 3 , 3
. 1) 3 가

, 公益的 要素

가

. 2)

. 3) 3

3 가

3

가

3 가

2

, “ 3

가

”

3

가

3 ,

3

3. 裁量性

3) 2000.5.12, 99 18909< >

” , “

가

가

(裁量收縮論).

4)

代執行 成立

1. 主體

行政廳 5) 當該

行政廳

第3者 가

3 權限 授與 者

3

가

가

4) 1982.3.2, 81 161.

5) 2 .

가

.6)

2. 客體(對象)

가. 代替的 作爲義務

行政法上 義務

‘ (2) ’ 代替的 作爲
義務 . 가 , 가 , 가
가

(15 2)

가 가

高度 專門技術性 (,

)

.7) 52 , “

6) 1997.2.14, 96 15428< >.

7) 1992.9.8, 91 13090< >.

”
 .
 가가
 가가 .
 “
 가
 , 25 38
 ” .8)
 , 行政處分 가 法令 9)
 33 , “ 가가
 가 ”
 .
 가
 가 .10)
 가 ,

가 .11)

8) 1992.9.8, 91 13090.

9) 2 : “ (,)

... ”
 10) 1990.10.30, 90 3201.

11) 1995.2.17, 94 13350.

가

.12)

. 不作為義務 作為義務 轉換

(2)

“

”

가

. 不作為義務

. 大法院 가

河川流水引用許可

.13)

(

轉換)

. 道路·公園敷

地 不法占有 不法工作物
違反 行政罰 .

代執行

, 執行罰

直接強制

(,

31 ,

74 ,

12) 1991.1.15, 90 7784.

13) 1998.10.2, 96 5445.

67 , 74 , 20 , 10)
가

. 大法院
“ 가

, ,
,” .14)

. 가

, . 가 .

. . 引渡·明渡義務 代執行對象性
土地·家屋 引導 ‘ (代替的
作為義務)
. . 退去
執行罰 直接強制 .

77

, 64 “ . .

14) 1996.6.28, 96 4374.

”
 代行 가 .
 引渡 拒否
 直接強制
 가
 , 64
 . 代行 . 가
 가 存置物 占有
 .15)
 1

大法院 “
 가
 ,
 .
 가
 ” .16)

15) . 가 가 存置物 占有 . 1) 代
 執行認定說 .
 (). 2) 代執行否定說 . 土地 建
 物 明渡義務履行 法令 行政處分 가
 代執行 ().
 16) 1998.10.23, 97 157< >

· 代執行 比例性

가

가

가

()

가

가

放置

公共 利益

가

가

不確定概念

司法審査 對象²¹⁾

戒告前

²²⁾

20) 1983.7.12, 83 150 ; 1989.7.11, 88 11193 ; 1993.9.14, 92 16690.

21) 1967.11.18, 67 139.

22) 1982.5.11, 81 232; 1983.7.12, 83 150; 1989.7.11, 88 11193;
1993.9.14, 92 16690; 1996.10.11, 96 8086.

大法院 ,
 가
 가
 '가 .24)
 가 . 1)
 ,
 ,25) 2)
 ,26) 3) 3
 ,27) 4) 8 ,28) 5)
 가 가
 ,29) 6)
 ,30) 7) 3
 ,31) 8)
 ,32) 9)

23) 1993.9.14, 92 16690.
 24) 1995.6.29, 94 11354 · 11361.
 25) 1967.7.18, 66 94.
 26) 1969.9.23, 69 94.
 27) 1980.9.24, 80 252.
 28) 1983.3.8, 81 188.
 29) 1983.12.27, 83 379.
 30) 1985.7.23, 84 699.
 31) 1990.5.11, 90 462.
 32) 1990.6.22, 90 2215.

가

가 ”
 42)

1)

242

0.25

가 가 가
 43) 2) 가 가 가
 44) 3) 가

가

45) 4) 가 가

가 가
 46) 5) 가

가 (가
 47) 6)

42) 1989.3.28, 87 930.
 43) 1967.1.31, 66 127.
 44) 1969.7.1, 67 470.
 45) 1982.12.14, 82 349.
 46) 1987.3.10, 86 860.
 47) 1990.12.7, 90 5405.

,
 ,48) 7) 가
 가
 , 가 , .
 . ,49) 8) 가 가
 가 . 가
 , ,50) 9)
 가
 가
 51) .
 “
 가
 가 ” 52)
 “
 가 ” 53)

48) 1991.3.12, 90 10070.
 49) 1991.8.27, 91 5136.
 50) 1992.4.10, 91 7200.
 51) 1992.4.24, 91 8111.
 52) 1974.2.26, 73 778.
 53) 1973.5.2, 72 2858.

代執行 節次

1. 意義

徵收 4 . 戒告, 代執行令狀 通知, 實行, 費用
要件 . 戒告 節次的
獨立 行政行為 .
先行節次 , 實行 , 戒告 令狀
, 費用 徵收 後行節次

2. 代執行 戒告

가. 意義

54) . “ 가 ()
1982.11.6.
40 2 . 3
”

54) 3 1 .

.55)

相當 履行期間

代執行實行

, 社會通念上

具體的 事實

裁量

權 가

, 判例

.56)

“

1971.7.31.

8.3.

‘ , ’

”

.57)

“

1988.5.24.

5.19.

가

5.24.

,

가

1988.5.27. 15 : 00

”58)

“

1991.11.25.

30.

가

28.

”59)

55) 1983.3.4, 82 11<

>.

56) 1990.9.14, 90 2048 ; 1992.3.10, 91 4140 ; 1992.6.12, 91 13564 ; 1992.12.8, 92 11626.

57) 1971.12.21, 71 382.

58) 1990.9.14, 90 2048.

59) 1992.12.8, 92 11626<

>.

.60)

.61)

. 性質

法的性質, 下命
 通知行爲 (通說・判例) 要式行
 爲 . 가 가
 가 ,62)

1

2 , 3

.63)

. 內容

가 .

60) 1992.3.10, 91 4140.

61) 1990.9.14, 90 2048.

62) 1962.10.28, 62 117.

63) 1994.2.22, 93 21156; 1994.10.28, 94 5144; 2000.2.22, 98 4665.

가
 .64) “
 ”
 .65) ‘
 ,
 ,
 .66) “
 37가 63 102 ”
 .67) “
 ‘
 203 13, 14, 15
 ,
 가 ” .68)

64) 1966.10.11, 96 8086; 1972.2.14, 96 15428; 1985.12.24, 85 314; 1990.1.25, 89 4543; 1991.3.12, 90 10070; 1992.2.25, 91 4607; 1992.3.10, 91 4140; 1992.6.12, 91 13564; 1994.10.28, 94 5144.
 65) 1980.10.14, 80 351.
 66) 1991.4.16, 90 11242.
 67) 1992.3.10, 91 4140.
 68) 1992.2.25, 91 4607.

1

.69)

.70)

. 戒告節次 省略

戒告節次 省略

が?

戒告

停止條件付

同時

(3 3) 非

常時 危険 切迫

節次

が

省略

,

(

74)

,

.71)

が同時

即時強制

, 72) 前者

1

.73)

69) 1994.10.28, 94 5144.

70) 1992.5.12, 91 8623.

71) 13 2

, 否定 判例 (1968.3.26, 67 2380; 1978.12.26, 78 114).

72) 1968.9.3, 68 981 ; 1992.6.12, 91 13564.

73) 1992.6.12, 91 13564.

3. 代執行令狀 通知

가 戒告

行政廳 代執行令狀

時期, 代執行責任者

費用

見

積書

.74)

心理的 壓迫 가

通知行爲

(.).

,75)

“

”

가

通知節次

.76)

가

4. 代執行 實行

74) 3 2 .

75) 1975.5.15, 74 47.

76) 3 3 .

物理的 力的 事實行爲 . 가 實力行使 . 權

가

證票

.77)

受忍 義務가 ,

義務者가 抗拒

實力 가? 가 가

가 가 3 가 , 가 가

가 具體的 事情

가

程度 抵抗 가

.78)

力 가 警察

.79) 가

直接強制 가 追加 代執行

77) 4 .

78) 15 2 “ 가 ”

79) 成田國際空港建設敷地 收用 ().

抵抗 刑法() 警察官職務執行法 代執行

(5)

多數說

가

가

不可爭力

5. 代執行費用 徵收

義務者

가

가

가

,80)

行政廳

文書

納付告知

,81)

費用納

付命令書

가

實費 辨償

가

80)

81)

5

,82)

.83)

가 先取特權 가 .84)

. 代執行 行政救濟

1. 行政爭訟

가. 爭訟對象

가

.85) 가

가

.86)

가

. 1) 가

行政行爲

執行停

止申請 . 2)

-
- 82) 6 1 .
 - 83) 6 3 .
 - 84) 6 2 .
 - 85) 1993.12.10, 93 12619.
 - 86) 1996.12.6, 96 6417.

節次

1) 戒告

가

가

가

87)

大法院 “

가

”

2) 代執行令狀

通知

3) 代執行 實行

(.

)

가

.88)

87) 1966.10.31, 66 25; 1967.10.31, 66 25.

88) 1994.2.22, 93 21156; 1994.10.28, 94 5144; 2000.2.22, 98 4665.

가?

“

,

2

”

.89)

.90)

가

.91)

2

가

.92)

. 代執行實行 終了後 爭訟可能性

短期間

89) 1991.11.15, 91 4746.

90) 1983.7.26, 83 1.

91) 1978.12.26, 78 114.

92) 1969.6.17, 69 76.

가
訴
利益

93)

(

)

94)

가

95)

“

,

”

,96) “

”

,

97)

가

가 , 가

93) 9 1 , 12 .
94) 1965.5.31, 65 25; 1976.1.27, 75 230; 1979.11.13, 79 242;
1993.6.8, 93 6164 ; 1993.11.9, 93 14271.
95) 1993.6.8, 93 6164.
96) 1995.7.28, 95 2623.
97) 1995.11.21, 94 11293< >.

承繼

1) 行政處分 代執
行 , 가

98) “ 가

가 ”
가

99)

,
,100)

2) (, ,)
,

,101)

,102)

-
- 98) 1982.5.25, 81 44; 1982.7.27, 81 293.
 - 99) 1998.9.8, 97 20502< >.
 - 100) 1999.4.27, 97 6780< >.
 - 101) 1990.1.23, 87 947; 1993.2.9, 92 4567; 1993.11.9, 93
14271< >; 1996.2.9, 95 12507< >.
 - 102) 1997.2.14, 96 15428< >.

2. 行政上 損害填補

가

,103)

가

2

,104)

,105)

가

가

,106)

가

가

,107)

가 가

가

,

가 가

가 (

가가

,

가 가

가

,108)

-
- 103) 1993.6.8, 93 6164.
 - 104) 1972.12.6, 72 1381.
 - 105) 1995.7.28, 94 19129.
 - 106) 1980.3.25, 80 254.
 - 107) 1979.1.12, 77 499.

가

가 가

.109)

가

.110)

當事者

訴訟

民事訴訟

(

)

.111)

-
- 108) 1989.6.27, 88 25861; 1990.1.12, 88 28518; 1991.12.10, 91 25628; 1995.7.28, 94 19129.
 - 109) 1980.8.19, 80 460.
 - 110) 1979.1.12, 77 499.
 - 111) 1972.4.28, 72 337.

가 .

,
가 , 가 가

가 .

64

가가 가 .

가 ,

가 .

:	,	,	,	,	,
,	,	,	,	,	,

行政刑罰 一考

高麗大學校 教授·法博 崔 峰 碩

가

(自省)

가

(Macro-Staat)

가

,

가(Neomacro-Staat)

가(Micro-Staat)

가

가

가

가(der einzige Staat)

“ (富)
” (Noam Chomsky) 가

가 가 Nazi(가)
(杞憂)

(豫斷)

(Goldschmidt)가

,1)

2

가

가

1) Vgl. J. Goldschmidt, Verwaltungsstrafrecht, 1902.

‘Chomsky

가

가

’가

Goldschmidt

가

가

(追論)

1.

가

, 가 . 가 ,

.2)

2)

1 , 2002. 09. .

16

가 , , , 3)

가 . “ (가) ” ,
가 가

가

가 , 가

(恣意)가

가 ,
가

() ‘ ,

3 . 가

2.

3) Vgl. Friedhelm Hufen, Fehler im Sanktionsfeld, 1998, S.314ff.

가
 , 가
 가
 가 ,
 가
 .4)
 ,
 ,
 ‘ ’ 가 ‘ ’ 가가
 ‘ (便宜性) ’
 (가
 가) 가 가,
 가
 ,
 가

4) , I, , 2002, 522 ; , (), , 2001, 478 .

5)

6)

가

7)

가

()

가

()

(別論)

8)

가

가

가

18

20

가

5) , , 41 4 , 2001, 292 .

6) , (), , 2000, 627 .

7) 1994. 4. 28. 91 14 .

8) , , 627 .

가

2

가

1.

가

가

(Strafwissenschaft)

(Kriminologie)

(Verwaltungsdelikt)

(Kriminaldelikt)

가

가

18

19

가

9)

(概觀)

가.

(Trops)

가

()

가

가

10)

19

(Polizeistrafrecht)

(Strafrecht)

9) 福田 平, 行政刑法, 有斐閣, 1978, 4頁 以下

10) Vgl. Trops, Begriff und Wert eines Verwaltungsstrafrechts, 1926, S. 50ff.

(1)
19 (Hälschner) (von Buri), (Keßler)
(Gefahr)

.12)

(2)
(Otto Mayer)

.13)

(Rosenberg) 가

.14)

(Erik Wolf)

Wolf

가 . . ,

11) 福田 平, 前掲書, 3頁 .
 12) 福田 平, 前掲書, 6頁 .
 13) Vgl. O. Mayer, Deutsches Verwaltungsrecht, Bd. 1., 1885, S.318.
 14) Vgl. Rosenberg, Die Dreiteilung der strafbaren Handlungen, ZStW 24, 1904, S.10f.

가

가

가

(Goldschmidt)

Goldschmidt

()

(反)

가

가

(3)

가

가

15) Vgl. E. Wolf, Die Stellung der Verwaltungsdelikte im Strafrechtssystem, Bd. 2, 1930, S.560ff.

16) Vgl. J. Goldschmidt, a.a.O., S.539ff.

() 가 (Garofalo)

Garofalo

가 . 가 .
가 , 가
.17)

() (M. E. Mayer)

M. E. Mayer

(). , ,
,
가 ,
가 ,
,

.18) M. E.

Mayer

(Kultur)

, 가
(Normierung)
가 . 가
, 가

가 .19)

17) , 33 .

18) Vgl. M. E. Mayer, Rechtsnorm und Kulturnorm, 1903, S.17ff.

가

(前)

20)

가

21)

19) 福田 平, 前掲書, 16頃 以下 .

20) Vgl. Roeder, Schuld und Irrtum im Justiz und Verwaltungsstrafe, 1938, S.31f.

21) (BVerfG) .
vgl. Göhler, Gestz über Ordnungswidrigkeiten, Kommentar 8. Aufl., 1987, Rdn. 6.

가

가

22)

가

가

가

가

M. E. Mayer

가

가

가 Erik Wolf

가

가

가 Goldschmidt

22) , , 1987, 16

가

2. 23)

가. (-)

가 18

.²⁴⁾ 1794

”, “

가

‘ (Bagatell-Kriminalität)

()

(§453-458 StPO)

.²⁵⁾ 가 1871

가

가

23) , , 14

24) Vgl. Rosenberg, Die Dreiteilung der strafbaren Handlungen, ZStW 24, 1904, S.5ff.

25) , , 1995, 24

가가 가 ,
(Verbrechen), (Vergehen), (Übertretung)

()

가 가
.26)

(-)

Goldschmidt²⁷⁾

가

1925

()

가

1933

()

가

. 2

, 1947

26) , , , 1991, 25

27) Vgl. Goldschmidt, Das Verwaltungsstrafrecht, 1902.

.28)

. (-)

3

가 . 1949

(Wirtschaftsstrafgesetz)

(Ordnungswidrigkeiten)

(Sanction) ,

. ,

.29)

1952 , (OWiG; Gesetz über Ordnungswidrigkeiten)

,

(-)

.30)

. ()

가 1968 1975

28) , , 33 .
 29) , , 1992, 49 .
 30) , , 30 .

가

가

가

(Strafwürdigkeit)가

가

가

³¹⁾

(OWiG)

(Geldbuße)

가

가 ³²⁾

3.

“

... ”

31) , , 25 .

32) , - , 1999, 48 .

가

,

가 가

,

,

가 가

不備

33)

· 行政刑罰 特殊性

1.

33) 同旨 , , 43 .

가

가

, 8 “

”

8 2

가

가

가

8

34)

11 1 “

...

...”

8

35)

가

34) , , 1968. 8, 33 .

35) , , 25 .

가 36)

가

37)

2.

가.

13 “ ”

가 ‘ ’

16

(1)

‘ ’

38)

가

36) , I, , 2000, 444 ; , (), 412

37) , , 325 .

38) , , 756 .

16

가

39)

가

가

가

가

40)

16

가

가

16

가

(2)

16

가

41)

16

가

가

가

가 가

39) , (), , 611 .

40) , (), , 1987, 316 .

41) , , 51 .

.42)

16 8 , 16

가 , 16 가 , 가

가 가

16

가

16

14

8

42) , , 385 ; , , 319

43)가 . 가 ,

44) .

가 ,

가

45)

. 法人 責任

가 .

46)

가

-
- 43) 108 , 2 3 , 31 .
44) 同旨 1993. 9. 10 , 92 1136 .
45) 1994. 5. 27 , 93 3377 ; 1986. 7. 22 , 85
108 .
46) , , 32 .

가 가 가
.47)

가

가 가
.48)

(刑種)

79 , 94)가 ,
(117 , 116)가 .49)

.50)

-
- 47) , 가 , 2000. 12. 32 .
 - 48) , (), 98 .
 - 49) , , 467 .
 - 50) , , 504 ; , (), 549 ; ,
, 437 .

가 .51)

9 11 ,

가 .52)

가 .

(,)

가 .53)

가

.54)

51) 同旨 , , 757 .

52) 31 9 10

2 53 ()

53) 112 1 , 54 , 60 .

31

2 가

가 .55)

가

13 1

가

11

가

.56)

1986

가

(48)

30

, 31

, 32

가

(39),

(116),

31)

(

8

54) 同旨 , , 505 .

55) , , 634 .

56) , , 743 .

가 ‘ ’

가 ‘ ’

가

가 가

가

가

3. (再論)

57)

가

가. (再論)

58)

57)

”

同人,

“
, 506

58)

()
.59)

.60)

가 가

.61)

가 가

-
- 59) , , 2 ; , , 468 ; , ,
 , 2000, 321 ; , ,
217 , 1994.09, 83 .
60) , , 468 ; , , 267 ; , , 450
 ; , , 758 .
61) , , 5 .

.62)

1

.63)

.64)

20

20

.65)

62) , , 7 .

63) , , 277 .

64) 1995. 6. 29. , 95 4674 ; 1998. 5. 28, 96 4

65) , , 40 ; , , 507 .

1.

가 가 가 가
가 가 가 .

가

,

.66)

가
가

가

.67)

, 章 가

66) , , 1988, 82 .

67) , , 49 .

가 , 가 가 .

가 , 가 .

가 가 , 가 () 가 ,

70)

犯

法行爲)

가 .

70) . 1985.12, 35 ; , 622 .

,

가 .71)

,
가
가

가 ‘ , ’

72)

.73)

가

(輕重)

가

71) , , 12

72) 1983

73) , 2000, 35

現行 犯則金制度 改善方案 檢討

建國大學校 法科大學 教授·法博 張 校 湜

가

가

가

가
가

· 犯則金制度 概念

1. 犯則金制度 意義

가
가

가

2. 犯則金制度 沿革

	1948. 11. 23	69	
	1951. 5. 7	200	
		1951. 6. 2	205
			가
		1956. 12. 26	413
			7 15
	1962. 9. 5	1142	
			1976.
12. 31	2955		
		가	
	가		
	1967. 3. 5	1900	
			, 1977. 12. 31
	3044		
		1973. 3. 12	2591
1975. 12. 31	2803		
			, 1981. 12. 31

3489 1984. 8. 4 3744
 5 7
 1980. 12. 31 3329
 .
 ,
 .1)

3. 犯則金 法的 性格

가
 ,
 가 가
 가 가
 ,
 ,
 가

1) , “ ”, 330 , 1991, 26-27 .

2)

가

가

3)

가

4)

, “ 118

” ,5) “

2) , “ ”, , 1999, 304 .

3) , , 26 .

4) 金東熙, 行政法 , 博英社, 2002, 449面; 金鐵容, 行政法 , 博英社, 2002, 353 ; 朴鈞炳, 最新 行政法講義(上), 博英社, 2002, 661面; 朴均省, 行政法論 (上), 博英社, 2002, 417面; 石琮顯, 一般行政法(上), 三英社, 2002, 510面.

5) 1995. 6. 29, 95 4674

” 6)

· 犯則金 關聯 外國 立法例 分析

1. 美國 民事金錢罰制度

가. 沿革

(civil money penalty) 7)

· 가

8)

6) 1998. 5. 28, 96 4

7) 5 (

) 7 (common law 가
20 가)

가 1
common law 7

8) H. J. Goldschmidt, Report in Support of Recommendation, pp. 72-76; An evaluation of the present and potential use of civil money penalty as a sanction by Federal Administrative Agencies, 2 Administrative Conference of the U. S. 896(1970- 72).

400

9)

· 內 容

1

(compromise)

가

· 90%

가

가

(The National

Traffic and Motor Vehicle Safety Act)

2

(trial type hearing)

9) Colin S. Diver, "The Assessment and Mitigation of Civil Money Penalties by Federal Administrative Agencies", Columbia Law Review, Vol. 79(Dec, 1979), P. 1438.

(substantial evidence rule)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時事點

가

가

가

가

.10)

2. 獨逸 秩序違反金制度

가. 沿革

가

10)

, “
16-1 , 2002/9, 376 .

”,

(die wirklich strafwürdigen)

1945 . 1949
(Wirtschaftsstrafgesetz) (Wirtschaftsstraftaten)
(Ordnungswidrigkeiten) ,
, ,
. 1952 (Gesetz über
Ordnungswidrigkeiten)

. 1968

.11) 1968

가 .

. 内容

3

11) 170

, 1 (1 - 34), 2
(35 - 110), 3
(111 - 131).

, ,
(46 1
) ,

.
1 ,

, , , , ,
. , , ,
,
(90 , 91).

가 .

. 時事點

가

, 가

,12)

3. 日本 反則金制度

가. 沿革

1968. 7. 1

가

가

가

가

12) , , 375 .

, , 가

.13)

. 內 容

9
3 , 1 (125), 2 (126),
가 (128 129 2), 4
(130 130 2), 5 (131 132)

가

가

가 , 가 가

.14)

, 가
, 가

가

가

13) 神垣英郎, “交通反則金通告制度に對する若干の問題”, JURIST(No. 369), 1967. 5. 1, 85面.

14) 日本警察廳, “反則金通告制度について”, JURIST(No. 369), 1967. 5. 1, 93面.

, 가

가

가

.15)

가

,

.

10

가

.16)

. 時事點

가

가

,

가

가

가

(126 1),

(126 2).

가

가

(127).

15) 安西温, “交通反則金通告制度にたいする若干の所見”, ジュリスト(No. 370), 1967. 5. 15, 126- 127面.

16) 日本警察廳, 前掲論文, 96面.

가

犯則金制度 現況分析

1. 租稅犯處罰節次法上 犯則金

가. 概 觀

가

.17)

節 次

(1) 犯則事件 調査

(2).

(3).

17) 李泰魯·安慶峰, 租稅法講義, 博英社, 2001, 851面.

(2) 通告處分

(8).

(9 1).

가

가

(9 3).

가

가 (10).¹⁸⁾

가

가

(11).

18) 1981. 11. 23, 81 1737; 1988. 11. 8, 87 1059.

(3) 告發

가 15

15
(12 1).

가

가
(12 2).

가

(9).

檢討

15

가

가

2. 出入國管理法上 犯則金

가. 概 觀

(101), 2 11 (102 106) , 1 .

. 節 次

(1) 通告處分

102 1). (

(104).

(102 3). ,

19) , , 30 .

(103).

(2) 納付節次

10

(105).

(3) 不履行 告發

10

(105).

(106).

・ 検 討

가

20)

가

가

21)

3. 道路交通法上 犯則金

가. 概 觀

20) , , 34 .
21) , , 369 .

. , 12
 . 113
 114 10
 2
 65가 3 10가
 가 (117 3).

· 犯則金 納付節次

(1) 通告處分

가
 , 가 , 가
 , (118).

(2) 犯則金 納付

10
 , . ,
 가 5
 (119 1).
 20
 100 20
 (119 2).

(74 1 2).

(3) 通告處分 不履行者 處理
가

, 가

(120 1).

30

7

(76).

100 50

(120 1).

100

50

(120 2).

(120 3).

. 檢 討

가

가 가

가

가

가 가 .22)

7 1

100 50

100 50

가

22) , , 33 .

가

가

5,000

10,000

가

가

가

,23)

4. 輕犯罪處罰法上 犯則金

가. 概 觀

10

2

5

, 6

, 7

, 8

50가

10

21가

· 內 容

(1) 通告處分

가

(6).

23) 金元主, “

”,

12 , 1984, 145- 146 參照.

(2) 犯則金 納付

10

,
.

5

(7 1). 1

20

100 20

(7 2). ,

(4).

(3) 通告處分不履行者 處理

,
가

,
.

100 50

(8 1).

100 50

,

(8 2).

. 檢 討

7 1

가

가

. 問題點 改善方案

1. 問題點

가. 人權 不當 侵害

가

가

가 가

,
,24)

· 犯則金納付 刑罰對替與否 合理性問題

가

가

가

가

가

가

가

24) , , 307-309 .

가 가 가 가 가

25)

處罰節次 複雜性

가
가 가

가

25) 神垣英郎, 前掲論文, 85-86面 參照.

가 .

가

2. 改善方案

가. 犯則金制度 必要性 全般的 檢討

가

가

,²⁶⁾

가

가

26)

“
5 , 1998, 66 .

”

가

27)

가

가

가

28)

· 現行法令 整備 制裁手段 單純化

27) , “ ”, , 1994/6, 67-68 .

28) . , “ ”, , 1995, 94 .

가

,

가

29)

,

가

가

가

가

29)

125 - 132

30)

犯則金制度 通告處分 實效性 權利救濟節次 講究

가

가

가

가

가

가

31)

30) , “ ”, (14
) , 1998, 278-279 .

31) , “ - .

가 .33) ,

가 .

가 .

가
가

가 .34)

. 結語

33) , , 34 .

34) , , 17 .

, 가

가

가

가

가 ,

가

가

가

: , , , , , , , , , ,

國際裁判管轄 實務運營 小考

- 改定 國際私法

特許法院 判事 柳 英 日*

目 次

. 序 論	. 民事訴訟法 11
. 國際裁判實務 運營	2. 一般裁判管轄(普通裁判管轄)
學說 判例	<以上 前月號>
. 改定 國際私法 國際裁判管轄	3. 合意管轄
實務 가 變化	4. 特別裁判管轄 가
1. 改定 國際私法 國際裁判管轄	가. 契約管轄
2. 改定 國際私法 2 立法趣旨	. 消費者保護管轄
解釋論	. 不法行爲
가. 法院-訴訟物 關聯 가, 法院-被	. 知的財産權 專屬管轄 - 侵害訴
告 關聯 가	訟
. “實質的 關聯” 立法趣旨 實	5. 國際裁判管轄 關聯裁判管轄
務上 意味	가.
. 國際條約 受容可能性	. 客觀的 併合
國內法 影響	. 主觀的 併合
. 個別的 管轄 檢討	6. 合理的 管轄已分 調整裝置
1. 禁止管轄 民事訴訟公	가.
法上	. 國際訴訟競合(Lis Pendens)
가.	. 不便 法定地
. 民事訴訟公法 5 2	. 結 論
營業管轄	<以上 本月號>

* : 11 74 20 ‘ ’ ‘ ’ , 21
, ‘ , ‘ ,

3. 合意管轄(Choice of Court)

國際去來가 國際裁判管轄 管轄合意가

가 , 2001 合意管轄

가 85)

86) 合意管轄 國際裁判管轄

要諦

'外國仲裁判定 承認執行 UN ' ,

가

民事訴訟法 29 1 “ 合意 第1審 管轄却院

” , 29 2

“ 1 合意 訴 書面

”

民事訴訟法 國際裁判管轄 合意

가 , 2

形式的 有效性(formal validity) ,

가 ,

가 .

85) 가 가 , (domicile), (submission), (branch), (trust), (physical tort), (counter claim) .

86)

, Andrea Schulz, "Reflection Paper to Assist in the Preparation of a Convention on Jurisdiction and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Preliminary Document No. 19(Permanent Bureau of the 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2002)

國際裁判管轄 合意 가 가 .87)
가 가 關聯性
가 가 . 民事訴訟法
, 1997. 9. 9. 96 20093

國際裁判管轄 가
專屬管轄 ,
가
合理的 關聯性 가
가 公序良俗
.88)

가 , 가
가 準據法
,

87) 4 2

1

a)

b)

c)

d)

88)

가 ,89) 가 ,90)

國際裁判管轄合意가

「 가 , 4
」 , 4
 . ,
 , 中立的
專門性 가 가 .
私見 .

.
 ,91)
 , 改定 國際私法 2 1 1 “
” 가 . “ ”

92), 國際裁判管轄
93)

89) , , 53

90) , “ 國際裁判管轄合意 有效要件” 國際私法研究 2 (1997), 337 , , 國際裁判管轄合意 內國關聯性 (上)(下), 1997. 11. 20. 15

91) Avril D. Haines, CHOICE OF COURT AGREEMENTS IN INTERNATIONAL LITIGATION: THEIR USE AND LEGAL PROBLEMS TO WHICH THEY GIVE RISE IN THE CONTEXT OF THE INTERIM TEXT, Preliminary Document No. 18., 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2002. 3. Column 5.

92) , (1), , (2000 11) 51

93) , , 53-54

가

가?

“ ”

.94)

가

가

가

,95)

가

2001

가

가

합

意管轄 對象

效力範圍

가

, 地域

審級

가

가 國

內法

.96)

94) , , 52

95) , 國際裁判管轄合意

(1996), , , 472 (1996. 1.) 473

(1996. 2.)

96) 合意管轄 「a court or courts of a Contracting state」 「the courts of a Contracting state」 Working Document No. 27

事案 物的管轄權
(subject matter jurisdiction)

州法院 聯邦法院 破產法院
一般法院 國內管轄原則
企業
契約實務 가
가 合意 有效
性 準據法 方式 有效性
(formal validity) 實質的 有效性(substantive validity)
適法性(lawfulness) 97)
國內法
가
實質的 有效性, 合意(consent)가 詐欺 強迫
慣行(usage)

4. 特別裁判管轄 가

가. 契約管轄

8 住所地 義務履行地 特別裁判管轄
“財產權 訴 住所地 義務履行地 法
院 ”

97) 가

가

.98) 1972.4.20. 71 248

改定 國際私法 2 1 1 “ ”

가

가 '義務履行地(place of performance of the obligation in question)'⁹⁹⁾ 가

100), 特徵的 給付(characteristic performance)

가

. 2001 6

6 101) 財貨 用役契約

가 義務履行地

98) , (, 1994), 303

99) 5 1

100) 1999 Working Document No. 65.

101) 註 22

統合案

가

金錢支給地 履行地

.102)

가

가

, 金錢貸與契約

金融利益

供與

, 外換買賣契約

金錢

가

가

金錢支給 契約管轄

改定 國際私法

가

가

國際裁判管轄

1972.4.20.

71

248

電子商去來

締結

履行

履行地 管轄

가

(targetting),

가

(disclaimer)

가

.103)

가

102)

6 variant 1 2 b)

103)

準據法,

5 ,

.104)

電子商去來가

가

電子商去來

國際裁判管轄

가

國際裁判管轄

가

消費者保護管轄

改定	國際私法	消費者契約	勤勞契約	準據法	裁判管
轄	特別	.105)			

(2001),	19				
104)	working document	20		6	variant 2 3
105)	27 ()	가			가 準
據法		常居所가		가	
1.				가	
	가			가	
2.	가	가			
3.				가	
	가 準據法			1	
	26			常居所地法	
1				17 1	3
		常居所			
1					常居所가
가					
1					

常居所가 가 , 常居所가 가 , 管轄合意 , 常居所 가

(protective jurisdiction)

1999 7 .¹⁰⁶⁾ 改定 國際私法 가 107)

가 가 國際裁判管轄

1. 가
2. 가

106) 7 消費者가 契約 1. 契約

가 常居所 가 消費者 가 訴
a) 請求 基礎가 契約 , 가

b) 消費者가 가 契約 , 消費者 契約
2. 消費者 訴 消費者가 常居所 가 가

3. 1 契約 4

a) 가 訴
b) 消費者 訴

107) 14 , 15 , 가 가

改定 國際私法

57

(), 16 ()
14 ()

.108) ,
(social policy)

가

가

保

護管轄

消費者保護管轄

가

가

가

改定 國際私法

商去來가

, 電子
가

가

가 . 改定 國際私法

1999 7 2001 6

가

가

가

14).
108) , , 17

(15).

가 , “ , ’ ,109)

1999 “ ”

가 , “ , 가 ”

가 가

1999 가

2가 , 電子商去來 가

가 ,110)

가 利益

分析的(interest analysis) 가 改定 國際私法

承認執行 가

109) 2001 4 가 가

110) 7

電子商去來

.111)

. 不法行爲

民事訴訟法 18 1 “ 訴
 法院 ” . 國際裁判管轄
 , ‘ ,
 . 1995. 11. 21. 93 39607
 製造物責任 國際裁判管轄權
 가 가

, , ,
 ,
 가 가
 가 가
 가

豫見可能性(foreseeability)

가 立證責任
 가 立證責任 , 國

國際裁判管轄 .112)

-
- 111) , , 53-54
 - 112) 10
 - 1. 가
 - a) 가 가,
 - b) 가 가 가

가 豫見可能性 存在

가 가

가

不法行爲

國際裁判管轄

.113)

常居所가 가가

Shevill v. Presse Alliance S. A.

.114)

가 가

113)

10 5

가

가

가

가 常居所

가 가

가

가

가

114)

1

Shevill

가

가

, Shevill
 가 ,
 가
 forum shopping 가
 가 , 電子商去來
 ,
 ,
 ,115)
 가 , 電子商去來 가
 ,
 , 2002
 4 (general affairs and policy) 1
 10 가 電子商去來

가 ,
 (The House of Lord)
 (European Court of Justice)
 “ 가
 , 가 가
 ” . *Shevill v. Presse*
Alliance S.A. (1992) 2 WLR I, CA.
 115) 10 3
 가 가 가

가 (ISP; Internet Service Provider)

10

電子商去來 知的財産權

不法行爲 國際裁判管轄 가

가

知的財産權 專屬管轄 - 侵害訴訟

知的財産權

가 , 知的財産權 準據法 裁判管轄 國際私法的

改定 國際私法 24 “知的財

產權 侵害地法 ” 知的

財産權 가 가 知的財産權

가 知的財産權 侵

害 準據法 ,116) 知的財

産權 國際裁判管轄 가.

侵害訴訟 國際裁判管轄

가 가, 가 가.

民事訴訟法 民事訴訟法

,117)

知的財産權

116) 國際私法 解說, (2001), 87

117) 民事訴訟法 31 (專屬管轄) 專屬管轄 訴

2 , 7 25 , 29 30

186 1 , 56 , 75 , 86
2 , 105

無效確認請求 權利範圍確認請求, 商標登録取消請求

가

,118)

,119)

國際裁判管轄

가 .120)

特許侵害訴訟

權利侵害禁止 請求訴訟, 損害賠償 請求訴訟, 信用回復
措置 請求訴訟 民事訴訟

가

,121)

2001 4

118) 16

가

4. , , ,

119) 12 A 4

120) 12 A 5

121) (2001), 12

125) 改定 國際私法 24
「知的財産權 侵害地法」 侵害訴訟
準處法 , 가
가 가 가
知的財産權 (incidental question) ,
가 가 가,
가
侵害訴訟 特許 無效
抗辯 新規性 . 國際
裁判管轄

125) 1953. 6. 12. (Kakyu Minji Saibanreishu,
Vol. 4, No. 6, p. 847) 侵害訴訟 가
. Masato Dogauchi, Jurisdiction over Foreign
Patent Infringement from a Japanese Perspective in Consideration of the
Hague Draft Convention on Jurisdiction and Foreign Judgments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as of June 2001, The Japanese Annual of International
Law No. 44(2001), 50-53

5. 國際裁判管轄 關聯裁判籍

가.

民事訴訟法 25 關聯裁判籍 1 “
 訴 2 24 法院 訴
 가 訟公目的 가
 ”, 2 “
 共同訴訟人 가 1 ”
 . 1 訴 客觀的 併合 關聯裁判籍 , 2 訴
 主觀的 併合 關聯裁判籍 .
 關聯裁判籍 國際裁判管轄 가.
 改定 國際訴訟法 國際裁判管轄
 , 가
 “國際裁判管轄 配分 理念” . 國際裁
 判管轄 配分 理念 , 民事訴訟 理念
 가 , 合理性 가 가
 .
 民事訴訟法 國際
 裁判管轄 가 가
 ,
 . 國際裁判管轄 個別 當事者別 ,
 個別 請求別
 .126)

126) 가
가

客觀的 併合

民事訴訟法 25 1 客觀的 併合 關聯裁判籍

1999

15 反訴 (third party claims)가 , 16 1 3 ,¹²⁷⁾ 가 牽聯關係 가 關聯裁判籍

가 .¹²⁸⁾ 關聯裁判籍 國際裁判管轄

1999 16 1 3 (third party claims) 2001 6 3 .¹²⁹⁾

가

127) 1999 16 가 , 가 3 가 3

128) , (註 19), 63

6 ,
國際裁判管轄

가
國際裁判管轄
關聯裁判管轄 .130) ,

Shevill 가
가 forum shopping
가 .

. 主觀的 併合

民事訴訟法 25 2 主觀的 併合 關聯裁判管轄
判籍 國際裁判管轄 共同被告
.131) 6 1 “共同被告
共同被告 1 가 ”
, 1988 9 27 Athanasios
Kalfelis v. Bankhaus Schröder, Münchmeyer, Hengst and Co. and
Others , 共同被告 牽聯性
가 , 牽聯性
22 3 “
,

130) , 1991 6 8 平成12 (才) 929 , 民集
55卷 4號, 727-734

131) , , 238

가
”
.132)

.133) 가 가

가 . 2001 6

가 .
가

民事訴訟法 , 保險訴訟公實務
.134) 國際裁判管轄

132) , , 237

133) 14 複數
1. 가 가 訴

가
a) 가 가
抵觸

b) 가
가 實質的 關聯
134) 1994 3 1995 2 1
民事

, 가

가

6. 合理的 管轄配分 調整裝置

가.

國際裁判管轄

가 合理的 管轄配分 調整

21 訴訟競合(*lis pendens*), 22

(Exceptional circumstances for declining jurisdiction)

.135)

(forum non conveniens)

國際裁判管轄

가

가

135)

， 訴訟競合

가

改定 國際私法 가 國際裁判管轄
訴訟競合

가 ,

.136)

國際裁判管轄

가

가

가 .

. 國際訴訟競合 (*lis pendens*)

國際陪審競合

. 民事陪審法 234 “ ”

, 重複判決 共同判決

國際陪審競合 國際裁判管轄

가 .137)

訴訟競合

, 1987.4.14. 84 57,58

136) 民事訴訟法 217 承認執行 (1971 2
, 商事) 5 3 a) , 承認
國際私法

가 承認 , 訴訟競合 가

137) , , 147

가 , 가
 , 既判力
 . 既判力 訴訟競合
 가 , 가 .
 가 國際訴
 訟競合 .
 ,
 承認執行 拒否事由
 가 138)
 債務否存在確證訴訟 債
 가 139) JP
 Morgan
 債務否存在確證訴訟
 ,
 가 ,

138) Soybean Importers Joint Committee of the Republic of China v. Ssangyong Shipping Co. Ltd. 837 F.2d 33(3rd Cir. 1987)

139) 國際去來, 商事訴訟 實務, (1997 8), 444-445

國際訴訟公競合

國際訴訟公競合

國際訴訟公競合

“優先主義”

가

, 가

140), 優先主義

가

“承認豫測說”

21

1

優先主義

承認豫測說

訴訟公競合

, 7

가

1

가

가

가

21

1

債務否存在

確認訴訟公

消極的確認

(negative declaratory judgment)

140)

21

國際訴訟競合 가 (前訴) 承認
 , 後訴가
 ,141) 가 國際訴訟競合 가 前訴 가
 ,142) 가 가
 , 債務否存在確認訴訟

가 ,143)
 . 不便 法定地

141) 가 21 6 가 가 가 가
 , 가 가
 a) 1 5 가
 ,
 b) 가 , 가 承認

142) 1994 12 6 Tatry v. Maciej Rataj , ,
 , 53

143) 가 가 ,
 가

(forum non conveniens)
(subject matter jurisdiction) (venue) 가

,
.144)

,
International Shoe Co. v. Washington
(minimum contact)

.145) 改定 國際私法
國際民事訴訟

,
가

訴訟

中止 訴 却下

146)

.147)

,
.148)

144) , (1995.
2.), 32

145) *ibid.*

146) 2 3

“ 2 國際裁判管轄權 가
國際裁判管轄權 國際裁判管轄權 가
가가

”

147) , 改定 國際私法 解説 (2001), 25

148) , (註 19), 73-74

管轄 拒否 例外的 狀況

가 , 가 , 가

常居所

承認執行 가

2가 가

가

1999

가

(optional clause)

,¹⁴⁹⁾

가

22

, 國際裁判管轄

149) Commonwealth Secretariat,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Ireland,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가 Working Document No. 81.

가 가 .

가 .150)

22

, 改定 國際私法 2 2 「國際裁判管轄
」 가

.151)

가 가 「 」

,152)

.153)

. 改定 國際私法

民事訴訟法 土地管轄

“ ” 國際裁判管轄

,154)

가

「 」 管轄 修正 가

國際裁判管轄 原則 發見

가

150) , , 153- 160

151) , (註 19), 74

152) 道垣內正人

153) Fawcett, James J. (ed.), Declining Jurisdiction in Private International Law, Reports to the 10th Congress of the International Academy of Comparative Law Athens, August 1994 (Oxford Clarendon Press, 1995), 17- 18, , 144

154) . 改定 國際私法 國際裁判管轄 實務 가 變化 2. 改定 國際私法 2

私見

國際裁判管轄

調整裝置

가 가

改定 國

國際私法

判例理論

改定 國際私法

2 1
行使

存否

2 2

가
改定 國際私法

定 國際私法

改

가

國際裁判管轄

가

國際裁判管轄

가

가

가

立法的方法

國際裁判管轄

中止(stay)

가 가 가

,155)

“法

155) , 156- 157

院 訴 ” 民事訴訟公法
 33 恒定 , 國際裁判管轄
 가 가 憲法 國民
 裁判 權利
 가.¹⁵⁶⁾

가 ,
 法院 가 가
 , 1999
 訴訟/競合 가
 判事
 意見交換(Trans-frontier Communication between Judges)
 가

.¹⁵⁷⁾

156)

Wagner가

, 가 가

157) Proposal by the deleg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Working Document No. 230 of the Special Commission 7- 18 June 1999)

Article 35 Communication or Consultation with Foreign Judges

1. Under the situations provided for in Articles 23 and 24, a judge of a Contracting State(the requesting court) may communicate or consult with a judge of other Contracting States(the receiving courts)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which court is manifestly in a better position to try the case at issue.
2. a) Each Contracting State may designate a national authority to receive requests from foreign courts to facilitate the communication or consult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1, above.
 b) Where a national authority has been designated as provided in paragraph 2 a), a judge of the requesting court shall first contact

交換

開始的 業務運營

濫用 防止

가

訴訟公擱延

가

가

.158)

結 論

改定 國際私法

國際裁判管轄 實務運營

가 改善方案

司法權 行使 範圍

企業 行動準則

豫測可能性

判決

流通(free circulation of judgments)

(WTO) 가

the national authority and not communicate or consult with the judges of the receiving court.

Note:

This proposal is designed either to replace Article 35(Transfrontier Communication between the judges) of Information Document No. 2 or to be inserted as a part of Article 23(lis pendens) and Article 24(declining jurisdiction)

158) Japanese Comments of the Governments and of the International Organisations on the preliminary draft Convention on jurisdiction and foreign judgments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adopted by the Special Commission on 30 October 1999 and on the Explanatory Report by Peter Nygh and Fausto Pocar, Preliminary Document No. 14. (Permanent Bureau of the 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2002), Article 22

自國民 利益保護

禁止管轄

가

.159)

가

가 가

國際的 互換性

가

司法 競爭力

國家利益

.160)

가

國家競爭力

下部構造(infrastructure) 核

.161)

: , , , , , , , , , ,

159)

가

(3),

가

承

認執行

. 1992

條約

, 條約

160)

가

가

161)

(), 85

共同名義 假登記權者가 賣買豫約
完結 賣買目的物 本登記
履行 訴 形態

大法院 裁判研究官 尹 瓊

共同名義 假登記權者가 賣買豫約 完結 賣買目的物 本
登記 履行 訴 必要的 共同訴訟 確
立 見解

借用 甲 乙 丙
賣買豫約 假登記
甲 辨濟期 意思 表示
賣買豫約完結 意思表示가 約定
乙 丙 共同名義 所有權移轉請求權假登記
甲 가
1 乙 2 1 原
因 가 1984. 6. 12.
, 83 2282 , 複數 가 가

完結 訴訟 乙 訴 不適法 本登記 一部 持分 가 理論的 根據 分析 必要的 共同 履行 解釋 妥當 가 檢討

· 豫約完結權 行使方法

1. 豫約完結權 性質

權 一方豫約 雙方豫約 가 豫約完結 가 本契約 單獨 形成權 通 說 判例¹⁾ , 日本 가

2. 賣買豫約完結權者가 數人 賣買豫約完結權 行使方法

가 가 數人 가 數人 共同

가. 學說

(1) 1 (共同行使說)

1) 2000. 10. 13. , 99 18725

準共有 ,
處分行爲 ,
264

(2) 2 (意思解釋說)
數人

가

가

가 가

가

가

2)

(3) 3 ()

· 大法院 判例 態度

(1) 共同行使說 採擇

, ‘ 가

가

2) 梁承泰, “共同名義 假登記 數人 賣買豫約者 法律關係”, 對象判例:
大判 1984.6.12. 83 2282, 民事判例研究(2) 7 (93.05) 20-22, 24-26
參照.

가

가

日本 判例

(1) 主要 判例

(가) 大審院 大正 12(1923). 7. 27. 判決

: 判決, 2人 共同名義 不動産 賣買豫
 約 1人 賣買代金 半 目的不動産
 半 分割 特定部分 所有權移轉登記 請求 事案
 「...民法 427 (民法 408) 債權債務關係 規
 定 賣買完結 形成權 同法
 264 (民法 278) , 形成權 行使
 使命 行使 權利
 處分行爲 共有者
 가 分配 行使 가 」 判示
 , 多數人 賣買豫約 權利者 權利 分割 가
 賣買豫約完結權 準共有 關係 , 行
 使 權利 處分行爲 共有理論 準共有者
 行使 判示 5)
 分析 : 判決 事案 擔保目的

5) (同旨) 大審院 大正 13. 8. 29 判決.

賣買豫約 , 豫約完結權 共同行使
所有權移轉登記請求 共同 訴訟 必
要的 共同訴訟

() 名古屋地方裁判所 昭和 53(1978). 3. 24. 判決
複數債權者 關係 賣買豫約完結權 準共有
, 債務者 豫約完結 意思表示 伴 賣買豫約目
的物 明渡, 移轉登記 求 訴 提起 賣買豫約完結權 處分
行爲 複數債權者
訴 必要的 共同訴訟 判示
小山昇

6)

(2) 日本判例 内容 分析(共同行使説 採擇)

가

3. 大法院 判例 疑點 提起

가. 豫約完結權 準共有 對象

278

6) 小山昇, “複數の債權者が別個の債權を根擔保する目的で債務者所有の不動産について共同で締結した買賣豫約の完結權の行使に基づく不動産の明渡・移轉登記を求める訴えは固有必要的共同訴訟か”, 對象判例: 78.3.24. 判決 名古屋地裁 昭42(ワ)2779 昭50(ワ)1290, 判例時報 916號 (242) (79.04) 165面.

, 7) 가

, 8) 9)

, 가
, 가
. 10)

. 賣買豫約完結 意思表示 所有權移轉 本登記節次履
行請求가 賣買豫約完結權 處分行爲
(消極)

大法院判決 日本 名古屋地裁 豫約完結權 準共有
處分行爲 目的物 所有權移轉登記請求 準共有者 全員
共同 履行 求 訴 必要的 共同
訴訟 判示 가

, 가 準共有 , 行爲가

7) 郭潤直, 「民法注解[X] 債權(7)」, 博英社(1997) 125 .
8) 小山昇, 前掲論文 167面.
9) 梁承泰, 前掲論文 24-25 .
10) 民法注解[V] 物權(2), 博英社(1992) 622 .

處分行爲 가? .
 賣買豫約完結 意思表示
 豫約完結權 行使, 賣買豫約 豫定 賣買契約
 (本契約) 完結 行爲 , 가 .
 賣買豫約完結 意思表示 賣買豫約 完結權 存在 自體
 가 , 完結權 가 存在
 狀態 가 賣買豫約 完結權 指向
 本契約 成立 目的達成 消滅 ,
 가 .
 , 段階 目的物 明渡 所有權移轉登記請
 求 賣買 本契約 權利 豫約完結權
 ,
 가 .
 가 .
 가 .11) ‘ , ‘ , ,
 .
 登記例規 複數 假登記權利者 中 1人 一部持分
 權 本登記 許容 論據
 가 가
 가
 가

11) 尹瓊「保全處分(假押留·假處分) 實務(上)」 (1999) 72-73
 參照.

가 (가) 가 .¹²⁾
 1984. 6. 12. , 83 2282
 ,¹³⁾ 가 가 가 .
 가 가 가 . 83 2282
 “가 가 ” ,
 가 가 가 ,
 가 가 267

1984. 6. 12. , 83 2282
 522 , 複數債權者 甲, 乙,
 丙 共同名義 賣買豫約 假登記 經了 甲 乙
 辨濟 附記登記 登記名義人 甲 乙
 抹消 丙 目的物 不動産 3

12) 1984. 6. 12. 522 .
 13) 가 , 83 2282
 , 實務上 假登記 登記簿
 本登記 1
 記載 慣例 , 數人 假登記權利者
 持分 本登記 登記關係
 登記簿 公示制度 實務的
 (梁承泰, 前掲論文 30), 가
 가 .

1 持分 .14)

. 共同行使說 不合理 點

者 . 目的不動產 持分
擔保權 實行 者 前提 債權
意思表示 全體 不動產 移轉 要求
不必要 強要 . 債權者 一部分 行方不明
債務者 債權者 協助
債權者 共同 權利行使 擔保權 實行
不可能 가 .15)

10

,16)

1

가

4. 小結論(單獨行使說 : 原則的 單獨行使, 例外的 共同行使)

가

14) 梁承泰, 前揭論文 32 .

15) 梁承泰, 前揭論文 26 .

16) 1992. 7. 28. , 91 44766, 91 44773 .

, 共有者 持分 處分 持分
 比率 使用, 收益 (263),
 1
 가 .
 1 265

,17)

. 18) 가
 .
 , ㉠
 , ㉡
 , ㉢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
 가 2가
 “

17) 金容晉, “數人 共同名義 擔保假登記 基 本登記請求權 行使”,
 對象判例: 大判 1985.5.28. 84 2188, 判例月報 186號 (86.03) 42 .

18) 1983. 07. 14. 484 (441). 가
 가 : 가

가
 , 가

” ,
 19) . 가 가
 가 가
 가 . 가
 가 가
 , 1985. 10. 8. , 85 604
 가 가
 가 .20)

· 複數債權者 賣買豫約目的物 所有權移轉登記
 請求가 必要的 共同訴訟

1. 學說 判例 態度

가.

複數債權者 ,
 가 必要的 共同訴訟

(1)

複數債權者 賣買豫約目的物 所有權移轉登記請求

19) 가 가

20) 黃仁行, “複數債權者 共同名義 假登記 本登記履行請求”, 對象判例: 大判 1985.5.28. 84 2188, 大法院判例彙編 4號 (89.01) 111-112 .

21)

(2)

複數債權者 賣買豫約目的物 所有權移轉登記請求
22)

(肯定說)

“ 가

가

“

”

23)

複數債權者 賣買豫約目的物 所有權移轉登
記請求가 必要的 共同訴訟 理由 準共有
賣買豫約完結權 處分行爲 求 論理가

(肯定說)

◎ 名古屋地方裁判所 昭和 53(1978). 3. 24. 判決

21) 黃仁行, 前掲論文 111-112 .

22) 梁承泰, 前掲論文 32 ; 金容晉, 前掲論文 43 ; 小山昇, 前掲論文 167-169面.

23) 1984. 6. 12. , 83 2282 ; 1985. 5. 28. , 84 2188
; 1985. 10. 8. , 85 604 ; 1987. 5. 26. , 85 2203 .

: 債權擔保 賣買預約 下級審
 判例 , 債權者 甲 債務者 A 金員 貸與 擔保 A
 所有 不動產 賣買預約 名義 所有權 移轉
 請求權 保全 假登記 , 乙 丙 A
 金員 貸與 不動產
 擔保方法 甲 賣買預約 甲, 乙, 丙
 共同名義 變更 登記節次
 甲 名義 假登記가 存續 , 債務者 A가 債權者 3人
 債務 甲(甲
 甲) 預約完結 意思表示 目的
 物 假登記 基 甲 本登記 不動產 引
 渡 訴求 , 複數債權者 關係 賣買預約完結權 準共
 有 , 가 “債務者 預約完結
 意思表示 伴 賣買預約目的物 明度, 移轉登記 求
 訴 提起 賣買預約完結權 處分行爲 ”
 複數債權者 訴 必要的 共同訴
 訟 判示 .
 : 事案 數人 債權者 1人 目的不動產
 賣買預約完結 意思表示 所有權移轉 訴
 求 .

2. 83 2282 判決 疑問點
 提起

前提 , 財產權 共有
 必要的 共同訴訟 大法院 判例 分析 , 數
 人 共同 賣買契約 締結 法律關係 .

가. 財產權 共有 必要的 共同訴訟 大法院
判例 分析

判例 “共有 所有權 持分 形式 共存 處分權 共
同 屬 ” 24) 保存行爲 根據
共有關係訴訟 固有必要的 共同訴訟

(1) 共有者側 訴 (能動訴訟)

(가) 原則(가)
가 (265).

.25)

가, 가

(共有物全部 撤去

妨害排除請求 訴,26) 引渡·明渡請求 訴,27)

28)),

1

24) 1965. 7. 20. , 64 412 ; 1994. 12. 27. , 93 32880, 93
32897 . 民法上 共有 同一物 數人 所有權
持分 形式 共存 處分權 共同 (數人
共同賣却 各者 持分 讓渡 讓受人 單獨所有
) 共有物 權利 共有者 各者 共有權
確定 , 共有者 全員 當事者 가

25) 民法注解[V] 物權(2), 博英社(1992) 574 .

26) 1968. 9. 17. , 68 1142, 68 1143 .

27) 1966. 4. 19, 66 283; 1968. 11. 26. , 68 1675 ; 1996. 10.
15. , 96 23283 .

28) 1996. 2. 9. , 94 61649 ; 1999. 8. 20. , 99 15146

() 例 外

: ,

,29)

,30)

1 가

,31)

共有物 所有權 確認請求 : 大法院 1994. 11. 11.
 , 94 35008 判決 共有物 所有權 確認
 3 共有者全員 必要的 共同訴訟
 , 共有者

,32)

1979. 8. 31. , 79 13 2人
 共同買受人 賣渡人
 1/2 持分 移轉登記義務 , 組合員
 同業體 買受 土地 所有權移轉登記請求權
 同業者 準合有關係 固有必要的 共同訴訟
 ,33) ,34)

29) 1999. 8. 20. , 99 15146 .

30) 1968. 10. 22. , 68 1609 ; 1970. 4. 14. , 70 171 .

31) 1982. 7. 13. , 80 405, 406 .

32) (同旨) 日最高裁 昭和 46. 10. 7. 判決.

33) (同旨) 1994. 10. 25. , 93 54064 .

(2) 共有者側 訴が (受動訴訟)
 判例 第三者 共有者 所有權確認請求 所有權保存登記
 抹消請求 固有必要的 共同訴訟 ,³⁵⁾ 共同相續人
 被相續人 履行 不動產所有權移轉登記請求³⁶⁾ 共有
 不動產 時效完成 原因 所有權移轉登記請求³⁷⁾
 共有者全員 被告 必要的 共同訴訟
 . 處分權 共有者全員 共同 歸屬 根據
 ,³⁸⁾
 共同占有物 引渡請求 共有建物 撤去請求 共同占
 有者 共有者全員 共同被告 必要的 共同訴訟
 ,³⁹⁾

(3) 分析

保存行爲 各人 持分權 分解 理論構成
 共有關係訴訟 固有必要的 共同訴訟 認定 拒否
 態度 . 例外 共有物 所有權 確認
 請求 . 日本 最高裁 判例傾向 , 共有
 關係訴訟 必要的 共同訴訟 根據 “不可分債權・債務

34)

(民法注解
 [V] 物權(2), 博英社(1992) 602 , 1996. 12. 10. , 96 23238
).
 가 .

35) 1972. 6. 27. , 72 555 ; 1991. 4. 12. , 90 9872 .

36) 1964. 12. 29. , 64 1054 .

37) 1965. 7. 20. , 64 412 .

38) 日本 最高裁 不動產 買受人 賣渡人 相續人 賣買
 契約 基 不動產所有權移轉登記 請求 訴 必要的 共同訴訟
 , 根據 債務가 不可分債務

(日最判 昭和 36(1961). 12. 15., 民集 15卷 11號 2865).

39) 1966. 3. 15. , 65 2455 ; 1968. 7. 23. , 68 1053
 ; 1968. 7. 31. , 68 1102 ; 1993. 2. 23. , 92 49218 .

理論”

.40)

. 數人 共同 賣買契約 締結 法律關係

가

가

(1992. 10. 27. , 90

13628 ; 1993. 8. 14. , 91 41316).

(1)

(可分債權)

,
가

.41)

數人

가

.42)

1

(2)

가

40) 가 409 1 가

41) 朴駿緒, 「註釋民法 債權總則(2) (第3版)」, 韓國司法行政學會 (2000) 151 .

42) 1979. 2. 27. , 78 2281 ; 1981. 2. 24. , 79 14 .

가

가 .

가 ,

“ 가 ”

.43)

. 肯定說 批判

(1) 主流的 判例 態度 背馳

가 1

가 가

, 複數 假登記 擔保權者가 假登記 所
有權移轉 本登記 請求 必要的 共同訴訟⁴⁴⁾
主流的 判例 態度

83 2282

가

43) 2000. 1. 14. , 99 51265, 51272 ; 2000. 12. 12. , 2000 49879 .

44) 1984. 6. 12. , 83 2282 ; 1985. 5. 28. , 84 2188 ; 1985. 10. 8. , 85 604 ; 1987. 5. 26. , 85 2203 .

擬制 .45)

(2) 理論的 面 問題가

83 2282 複數債權者 賣買豫約目的物
所有權移轉登記請求 準共有 賣買豫約完結權 處分行爲
必要的 共同訴訟

, 段階 所有權移轉登
記請求 賣買 本契約 權利 豫約完
結權

(3) 不當 結論

本登記請求
, 單獨 가

83 2282 複數債權者 賣買豫約目的物 所
有權移轉登記請求 必要的 共同訴訟 賣買豫
約完結權 處分行爲 , 1

가
不動產 賣買契約 買受人 數人 1

45) 梁承泰, 前揭論文 29

人 持分移轉登記請求 가 必要的 共同訴訟
 가 (“數人 共同 賣買契約 締結 法
 律關係”), 가 法理가
 . 賣買契約 效力 豫約 發生
 權利行使方法 .

. 小結論(否定說)

複數債權者 賣買豫約目的物 所有權移轉登記請求

,

不動産 賣買契約

가

,

豫約 , 가 賣買
 複數
 假登記 ,

1

1984. 6. 12. , 83 2282 ; 1985. 5. 28. ,
 84 2188 ; 1985. 10. 8. , 85 604 ; 1987. 5. 26. ,
 85 2203 “

”

名古屋地

方裁判所 昭和 53(1978).3.24. 判決

(83 2282)

가
가

가

가

2002. 7. 9.

, 2001 43922, 43939

“ 가

가

가

가

가

가 ,

가

가

”

推測

, 問題解決

示唆點

: () 가 , , , , , 가 , , ,

專門職

會社形態

研究*

大學校 法科大學 法學科 助教授・法博 朴 庠 根

專門職(profession)

가

合

會社가

가

會社

組

合

同事務所,

‘法人’

.1) 合同事務所

*

信賴關係, 專門教育 資格制度,
理, 職域別 特別法

職業倫

가 . 8)

2.
組合

法人格 가

獨逸

가 . 9)

가

가

3. 專門職法人
專門職法人
專門職 ,

가

者가 가

가
個人的 性格

, 가

가

, 10)

8) (PartGG) 1 2 .

9) Zuck, Anwalts-GmbH, 1999, Einl. Rn. 1 ff.

10)

協同組合(Genossenschaft) 가 .

團體法
的思考
性¹¹⁾ 特性 , 非商行爲

合名會社 形態 專門職法人 — 法務法人 法律關係

1. 總說

辯護士法
法務法人

11) 專門職 商行爲 (崔基元, 3 (1997), 73 ; K. Schmidt, Handelsrecht, 5. Aufl. 1999, S. 282 f.).

(40).

合名會社

(58 1).

가 ,12)

가 .

2. 法務法人 設立

가. 定款 作成

(1) 定款 記載事項

가

가

,

(41).

42

() 7가

大韓護士協會

‘法務法人定款準則(

)’

42

179

.13)

(2) 定款自治

가 .

12)

“

”, 法律新聞(1999. 5. 17.), 1

13)

末尾

外部關係 強行法規 , 內
 部關係 私的自治가 , 民
 法 2 , 103 私法 會社法

· 構成員

(1) 構成員辯護士

5 (45),
 構成員 社員
 가
 自然人
 資本參加 匿名的 가 ,¹⁴⁾ 가
 3 가 ,¹⁵⁾
 가 ,¹⁶⁾
 가

14) (BRAO) 59e 4 .

15) Gail/Overlack, Anwaltsgesellschaften, 2. Aufl. 1996, S. 25 ff.

16) 가 가

(Henssler, ZHR 161(1997), 305, 312).

가

(2) 所屬辯護士

(47).

雇用

가

합

資會社

二元構造

.17)

(3) 他專門職

(가) 公認會計士

辯理士

가

가

가

가

22

,18)

가

.19)

(one stop

service)

가

辯理士

特許, 實用新案, 意

匠 商標

訴訟公代理人

(

8),

()

17) Seibert, Die Partnerschaft, 1994, S. 57.

18)

19) , 2000, 3 3.

類住適用

()

職務 範圍가

(40),

(49),

(3),

48 3

() 立法論

構成員 가

가 가 ,
가 (20)

· 出資 · 持分

(1) 出資

出資

(42 3 , 43 2 3).

, 金錢 財産 信用

20)

59f

勞務 , 聲價
 가 가
 (42 3). 勞務
 ,²¹⁾ 出捐
 가 6 勞務

(2) 持分²²⁾

持分
 가 가
 가 , 가
 ,
 .
²³⁾
 持分 變更
 가 가

3. 構成員 變更

가. 構成員 加入 · 脫退

21) Gail/Overlack, Anwaltsgesellschaften, S. 41 f.

22) 拙稿, “人的會社持分 法律關係”, 「

」, 24, 602 .

23) . 5 5

가 25 25 5

가 . 가 4

29가 29 5

, 29 4 .

(1) 構成員 加入

가
 申告 (46 1), 加入節次
 가
 入社 가
 가 加入契約 ,
 出資
 合名會社 가
 가 定款
 多數決
 ,
 가
 ,24)
 가 (179 3)
 ,
 가 가
 ,
 ,25)

24) A. Hueck, Das Recht der OHG, 4. Aufl. 1971, S. 390 f.
 25) Grunewald, Gesellschaftsrecht, 4. Aufl. 2000, S. 64.

가

가

(213 準用).

(2) 構成員 脫退

(가) 脫退事由

脫退 自由

46 2).

217

當然脫退原因

(46 3),

가

218

退社原因

, 1 (

)

46 3 4

, 2 (

)

217

가

, 3

6 (, ,

,)

220

除名

.27)

承繼

219

26) Grunewald, Gesellschaftsrecht, S. 63 f.

27) 拙稿, “社員 除名”, 『 』, 1999. 1.(269), 60 .

가

2 (225 1 準用).

() 脫退 構成員 持分 還給

持分 還給 (222 準用).

46 2

719 1 準用

勞務

가

가

,28)

構成員地位 讓渡

, 197 準用 , 同
가가 . 가

意 持分

가

(225 2 準用).

4. 內部關係

28) 24 甲 .

가. 定款自治

構成員會議

(42 4)

意思決定 業務執行

定款自治

(200).

· 業務執行

(1) 總說

業務執行

가

(2) 法務法人 業務

(49),

가 (50 1)

(50 3).

業務執行權 代表權 가

가
自己機關

가

(3) 法務法人 運營

構成員會議

42 4 가 ,

3

社員總會

機能性 가

理事會 가

가

201

가 . 가

1

理事會

가

(4) 異議權·業務監視權

異議權 가

(200 2 (

201 2)), 業務監視權 가

(195 ; 710).

가 , 가 .
가 ,

· 意思決定

(1) 全員一致 多數決

) 商法 (가
定款

商法 204
가

가

204 가

(2) 意思決定方法

會議體

書面決議가 ,
가 . 構成員
會議 理事會
(42 4).

(3) 議決權

가 가 .
1人 1個 頭數主義 ,
(casting vote)
가 .
,29)

. 利益分配

(1)
가
(195 ; 711 準用).
가
가 .
가 .

29) 13 .

가

(2)

가

5. 外部關係

가. 代表

(1) 代表 二元化

가

(42 5 , 43 4),

(50 3).

(2) 法人代表

3

(209 準用).

(50 3

),

(同法 42 5

),

(同法 43 2 4),

法人 代表

代表辯護士

가

共同代表

(3) 業務(辯護士職務)執行 代表

業務執行

가

(50 3

).

가

法人名義

(50 1

).

(87 ; 31), 가

591

가 가

自己機關

社員 責任

50 1

가

50 3

特別

責任

(1) 問題 所在

가 가

가 212

直接・連帶・無限責任 가

(3) 所屬辯護士 責任

가

(215 準用).

不真正連帶責任 .33)

. 有限會社 形態 專門職法人 — 會計法人 法律關係

1. 總說

가

有限會社

40 2).

2. 會計法人 設立

가. 定款 作成

23 2

ZHR 161(1997), 337, 344 .

33) 鄭東潤, (3 , 1997), § 215 III; 崔基元, (11 , 2001), 1047 .

定款自治

가 (556 1),
가

(545),

社員

, 3

(26 5),
, 2001

5

34)

35)

가 50

545 가

가 ,

26 5

3

, 545

50

出資・資本金

34)

1),

5

3

5 (

27

),

20

10 (

26 1

26 2)

35)

,

, 2001, 10 .

27 2

가

가

27 2 4

3. 社員 變更

가. 持分 讓渡

(556 1).

가 (同條 1).

. 脫 退

가 (36).

가

가 가 38)
自意 他意
가

, 除名 가 39)

40)

4. 會計法人 機關

가. 總說

理事, 代表理事, 社員總會
任意機關 監事 (

568 1 準用).

34

3 가 가

有限會社 株式會社

理事

38) 36 3 .

39) 崔基元, 1001 .

40) 578 , 368 4 .

3 (26
1). 自己機關 .41)

(
34 1).

(547 準用),
(567 , 382 1 準用).

(564 1 準用).
理事會 가
. 代表理事

(26 4),
3 (11).

(34 2).
,
(562 2 準用). 가
(562 3 準用).

, 가 562 2
,
562 2

41) 26 1 .

社員總會

最高機關

1座 1個

(575)

監事

任意機關 監事 (568 1 準用)

569 準用)

5. 外部關係

가. 代表

(26 4)

理

事が (34 1)

가

(同條 2)

2

, 同法 26 4 가

가

. 責任

, 가
損害賠償準備金 (28 1).
100

2 , 2
100 10

(20).

解散

(37 3).

가

가

가

. 立法論

1. 會社形態 摸索

가. 總說

會社 合名會社 有限
가?

民法 商法

42)

가

合資會社 株式會社

損害賠償責任

合資會社

가

가

가

가

42)

, 「 (law firm) 」 (2000)

(2) 獨逸 立法例

11 24 45) ,44) 1994
 46)
 1998 辯護士有限會社
 (Rechtsanwalts-GmbH) 가 1999 3 1
 ‘ (Rechtsanwalts-gesellschaften)’
 59c 59m 11 .47)
 損害賠償責任
 48) 49) 50) ,
 가 .51)
 가
 59j 가
 가
 250 (Euro) (同條 2).52)

44) EGH, JW 1936, 2409.

45) BayObLGZ 1994, 353 = ZIP 1994, 1868 = DB 1994, 2540 = NJW 1995, 199.

46) (BGH)

(BGHZ 124, 224).

47)

(law firm) , 8 .

48) Dittmann, Überlegungen zur Rechtsanwalts-GmbH, ZHR 161(1997), 332, 335 f.

49) Henssler, Die Rechtsanwalts-GmbH — Zulässigkeit und Satzungserfordernisse, ZHR 161(1997), 305, 321 ff.

50) Hellwig, ZHR 161(1997), 337, 356 ff.

51) 59j 4 .

52) 25 Euro (

51 4). ,

가

(同條 4).

2. 現行 制度 改善方案

가. 總 說

合名會社 有
限會社가 .

malpractice 가 가 ,

合名會社 가
專門職 가 , 定款自治 가
內部關係 .

有限會社
가 ,

(), 1998, 234 .

職務遂行 損害賠償責任
 (1) 合名會社 專門職法人 — 行爲者責任

行
 爲者責任(Handelndenhaftung)

無限責任 有限責任

가 .53) 가

.54) 立法例 獨逸
 (Partnerschaftsgesellschaftsgesetz — PartGG)⁵⁵⁾ 8
 2 (Bundesrechtsanwaltsordnung — BRAO) 51a 2

1998

53) Michalski/Römermann, PartGG, § 8 Rn. 12 f.

54) 212 1

55) Gesetz über Partnerschaftsgesellschaften Angehöriger Freier Berufe.

崔基元/朴庠根, “自由職業人 合同會社法律”, 「
 」, 35 2 (1994), 255 ;
 , (law firm) , 4 ; 崔秉
 珪, “
 」, 7 (, 1997), 215

, 實際的 關與(tatsächliche Befassung)
 , . (56)
 가 ,
 57) 가 ,
 (58)

(2) 有限會社 專門職法人 — 專門職責任保險

.
 .
 가 가
 . 가 가 .
 malpractice 가
 責任保險 .
 가 , 가
 , ,
 가
 . 獨逸 가 가 ,
 가 가 (59)

56) Michalski/Römermann, PartGG, § 8 Rn. 28 f.

57) Feuerich/Braun, BRAO, 5. Aufl. 2000, § 51a Rn. 14; Henssler, PartGG, 1977, § 8 Rn. 57.

58) Michalski/Römermann, PartGG, § 8 Rn. 30.

59) 51 , 59j .

1.

“ 公共性
(2)”.

獨立
獨立性

가

2.

合名會社

定款自

治

가

行爲者責任制度

malpractice

가

專門職責任

保險制度

가

3.

合名會社

가

有限會社

가

4.

一般去

60)

: , , , , , , , , , , ,

60) 立法例 (PartGG),
 (société d'exercice libéral — SEL) (loi n° 90- 1258),
 ((Model) Professional Corporation Act)
 元容洙, “
 ”, 『 』, 18 1 (1999
), 185 .

一任賣買 證券會社 損害賠償責任

地方法院 民事57單獨 法院主事 金 鍾 昊

○
· H가 1999. 7. 12. 1. D (‘
,) 12 1,000
, 2. Y
, 1999. 8. 11.
200 , 190
100 , 12. 10,000 ,
400 6,300 ,
13. 190 700 가, 8.
19. 9. 8. ,
2 169,500 .
· Y가
Y가
· Y 1999. 8. 9. LG

○ : 2002. 3. 29. , 2001 49128

○

1 (), 2000. 10. 6.
, 99가 22572

(,), 2001. 6. 26. ,
2000 60786

(,), 2002. 3. 29. , 2001
49128

. 序言

1)

가

2)

1) ; , , , 2000. 51

2) , 2000. 17

『 』 . 가
「 」

가
70 2 , 10%
30 , 30%

가

, 가 ,

가

가 “

”()

(3 1)

3 2).

(52)

(13 3) 가

(4).³⁾

, ,
가 .

4)

3)

4)

가

가 가

· 適合性原則(The Suitability Doctrine and Know Your Customer Rules)

가 . 가
(recommendation) , ,
(3 2).⁵⁾

.⁶⁾
(reasonably supported by the facts)
, 가

.⁷⁾
가
.8)

가 .⁹⁾

5) ,

(3 3).

6) The Suitability and Know Your Customer Rules .

7) Thomas Lee Hazen, The Law of Securities Regulation, WestLaw, 1996.
503p.

8) , , 195 .

9)

(broker-dealer) .10)

가

SEC가 (self-regulatory)

11) NYSE Rule 405 “ (know your customer)” 12)

13)

가

,14)

가

10) Thomas Lee Hazen, op. cit., 503p.

11) In re Nicholaou, SEC Admin. Proc file No. 3-8160. Sec. Reg. & L. Rep. (BNA) (SEC July 28m 1994)

12) NYSE Rule 405, New York Stock Exchange Guide (CCH) ¶ 2405

13) 가 . 1980
1980

가 (1 (3 , 1998), 3
) 가
가

14) (sophisticated)
(Sheldon Co. Profit Sharing Plan & Trust v. Smith, 828 F.Supp. 1262(W.D.Mich.1933)).

가 . 가
.15) ,
가 .
가 16) .
NASD 가
.17)
가 가 .
가 가
가 .18)
가
가
가
가
가 .

15) Hilary H. Cohen, Suitability Doctrine : Defining Stockbrokers' Professional Responsibilities, 3 J.Corp.L. 533 (1978) ; Robert H. Mundheim, Professional Responsibilities of Broker-Dealers: Suitability Doctrine, 1965 Duke L.J. 445

16) 가가 5 penny stocks .

17) Art. , Sec. 2 NASD Rules of Fair Practice, NASD Manual (CCH) ¶ 2152

18) , , 195

가 .

19) 가

, 2 90%

,

가

,

,

가

가

,

가

,

가

.

(Unsuitable Recommendations)

,

가

가

.

19) 2001. 4. 27. , 2000 30943

가

가

가

가

(52 1

),20)

(4 1).

.21)

가

.22) ,

가

20) ,

2000. 11. 21.

(13 3 1).

36 3

21) ,

52 3

36 3

1 “ 가

가

22) ”

1996. 8. 23.

, 94 38199

가 .
 NASD 가
 가
 가 .23)
 ,
 () () 가
 , 가
 , 가 가
 가
 .24)

가
 가 .

23) Art. , Sec. 2 NASD Rules of Fair Practice, NASD Manual (CCH) ¶ 2152 , NASD 가

24) Keenan v. D.H. Blair & Co., 838 F.Supp. 82, 87(S.D.N.Y.1993)
 가
 가
 (unsuitability)

가

(52 1).

2 36 3
가

25)

26) ,

52 1 가 ‘

,

가

27) ,

25) (公序) (最高裁判所 1997.

9. 4. 判例時報, 1618).

26) 1996. 8. 23. , 94 38199 .

52 1

27) 가 가 . (52
1997. 2. 14. , 95 19140)

1

가

, 가

가

가 가 28)

52 1

가

52 1

1% 가

52 1

28) , 1996. 8. 23. , 94 38199
1999. 6. 11. , 97 58477

가가

가 가

가

가

가 가

.29)

.

,

가

가

가

가

가

가

52 3

가

가

.

.30)

가

, 가

(107 1).

,

.

가

(107 2 , 20

2).

(20 2 2),

(20 2 1 2),

(20 2 3).

29) 1996. 8. 23. , 94 38199 .

30)

가

.

(208 3). ,
3 2

107 1

.

가

, 가

, ,

, 가

31)

107

,

107

가

가

가

107

.

,

31) 1979. 3. 27. , 78 2483

,
 가 가
 , 가
 ,32) Y가
 1999. 8. 11. 가
 가 가가 가
 Y
 , ,
 LG , 가 Y “LG
 ” 가, “LG 가 ”
 (
), Y
 “LG
 가 ”
 , Y LG
 , ‘... ’ ,

32) 1996. 8. 23. , 94 38199

가 , , Y , , 가 , , , , Y LG , Y , , , 가 , 가 , Y가 . 가 , Y가 .

(Excessive Trading in Securities)
(in and out trading)

가 . 가 (churning) .³³⁾

33) Edward brodsky, Measuring Damages in Churning and Suitability Cases, 6 Sec. Reg. LJ. 157(1978) : Mark C.

(day trading)가

가

(107

2 , 20 2 1 2).

SEC 15c1-7 34)

가

(discretionary power) 가

가

가

가

.35) SEC Rule 15c1-7

가

“ (manipulative), (deceptive) (contrivance)”

(fraudulent)

.36) ,

가

,37)

Jensen, Abuse of Discretion Under Rule 10b-5 : Churning, Unsuitability and Unauthorized Transactions, 18 Sec. reg. LJ. 374(1991)

34) 17 C.F.R. §240. 15c1-7.

35) Thomas Lee hazen, op. cit., 515p.

36) 17 C.F.R. §240.15c1-7. 15 U.S.C.A. §78o(c)(1) . NASD Rules of Fair Practice, Art. §15(a) NASD Manual (CCH) ¶2165 American Stock Exchange Rule 422, 2 ASE Guide CCH ¶9442가

37)

(turnovers)

가

(substantial disparity)

(Thomas Lee Hazen, op. cit., 518p.).

b 15 c Common Law

10b-5

Common Law

(州)

(blue sky law)

Common Law

10b-5

38)

power) , 가 (discretionary) , 가 , 가

39)

(in and out trading)

38) Biggans v. Bache Halsey Stuart Shields, Inc., 638 F. 2d 605 (3d Cir. 1890) ; Baker v. Powell, 1985 WL 5828, [1985-86 Transfer Binder] Fed. Sec. L. Rep. (CCH) ¶92,407 (D.N.J. 1985)

39) Hecht v. Harris, Upham & Co., 430 F.2d 1202 (9th Cir. 1970) (portfolio) 1% 10 1 4.7%

Adams v. Swanson, 652 F.Supp. 762 (D.Or.1985) 150 120 가

.40) ,

가

()

가

가 .

.41) 가

,

,

가 ,

.

,

,

가 ,

가

가

.

가

(in and out

trading)가

Y가 1999. 8. 12.

13. 2 가 7 8,000

,

.

Y가

가

가 가가

가 가

40) 1996. 8. 23. , 94 38199

41) 1997. 10. 24. , 97 24603

Y가

. 結論

3 5

가

가

가

Y

3 (

) 가

가

가

(756).

가

()

가

가 .42)

42) 1996. 8. 23. , 94 38199

가

가 .43)

, 가

107

가
Y가

가
Y가

43) 1994. 1. 11. , 93 26205

20. Y “ Y 1999. 8. 가
 ” 1
 , 7
 , 9 Y
 ,
 1 가 () Y
 , Y
 가 . 1 9
 2000. 9. 20.
 ,
 Y
 ,
 Y
 ,
 Y
 . 1
 . , Y
 가 .

: , , , , , , , know your customer,
--

◇ 紀行文 ◇



地方法院 南部支院 判事 廉 元 燮

1.

가.

가 1) 2)

가 가 .

, 7

3)

1) (蒙古) ,

(MONGOLIA) .

2) www.chingiskan.com

3) , 2002 6 www.mongolschool.com
“ ,
”

가

MIAT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2

40

4)

가 (

가

가

가

)가

가

가

4

4) Ulaanbaatar, ‘

DDR . 1 300Tg .
 (Flower Hotel) 1 , 가
 가 , 1
 가 가
 가

2.

가. 6) . 7 30

Hangard Airline 50

3 40

가

5) (Tugrik) , 1 1,105Tg
 가 1 1,170

6) , 30%

가

1 20 500km
(')
50

2 가 가 가
(' 가 가)
38km 가

40
10 가 가
가



< 가 >

가 2km ,
 가 ,
 , 가 .
 . 가
 . 가
 . 가
 , 가 .
 , 가 .

가 . , 가
 3m 가 . 가
 가 . 가
 3 가 ,
 , , , , .
 , 가
 가 , 가 .
 가 .
 . 가
 . 가 가 ,
 . , 가 가 ,
 , 가
 가 . 가 가 가
 , 가
 . 가 가 .
 가 가
 .



< >

, 가 .
4 .
1 30 . 가
, 가 .
가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200km

.

가
가

. 가

가

,

가

.

1

. 가

1

.

. 가 가 가

가

가

.

2

. 가

,

가

. 가

가

가

가

가

,

가

.

가

.

.

1,000m

가

3.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 (淸)

가 1911

7)

가

1924

가가

70 가

가

가 1992

10

27m, 62t

1

6,000

가

2

가

250

1/4 6 70

가

7)

, 가 가

5 600 ,

가 10 100 ,

, , 가

7 8 , 2 3 ,

가 가 2002

,
,
,
.

4.

가.

70km
가 , 가 가
가 , 가 가
가 가 . 1
가 , ' '
가 . ,
가 ,
가 , 가 가
가 .
가 1 20 가

가
,
가
, UNICEF(
)
가 15km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 10 가
가



< >

,
 ‘ ’(‘ ’,
)
 , 가 가
 가 가 가

()
 가
 가



< , , ,) (가 , , , >
 가 가 가
 가 가
 가 가 30
 가

가 가

가

가

,

가 가

.가 가

,

5.

가.

,

가

가

,

가

,

,

가

가

가

가

4

가

가

가
가

가
가

2

(Naran Tuul)

, 가

1 50

. 가 가

가

. 가

Khan-Uul

가

(가

).

가

가

가

. 가 가

가

가

가

3

2

가

가

가

6.

가 가

가

가 가

. 6

“

” 가 가

가

,

가

가

, 가

- 2002 8 -



가

辯護士·佳山 金容燮

가

가



가 ...

法務士(光州地方法務士會) 朴 正 皓

가

가

가 가

가

가

!

가

가

가 가
가

-

.....

가

가

가

가

.....

詩



가

法務士(水原地方法務士會) 李 補 淵

가
가.

가

.

◇ 會員動靜 ◇

2002. 10・11月 開業申告 辯護士

姓名	所屬會	事務所	電話番號	申告日字
李德善		4 1681(3-805)	535-4110	02.10.14
韓振洙		27 118(18)	772-4366	02.10.15
崔性秀		1 1490-3(601)	051)951-0202	02.10.15
李哲雨		1575-2(301)	523-9333	02.10.16
沈學燮		1685(2-1406)	3482-2055	02.10.17
金榮敏		223()	3703-1114	02.10.17
李珍鎬		27	3771-5643	02.10.22
南宮萃		35-32(6)		02.10.29
徐石虎		27 191(5)	709-0627	02.11.05
姜智遠		1554-8(201)	588-1026	02.11.07
朴海燦		1305-1(KDS 4)		02.11.08

2002. 10・11月 登錄 法務士

所屬會	姓名	事務所	電話番號	登錄日字
	李達雄	500(500 208)		02.10.16
"	朴贊鍾	2 713-22	991-8202	02.10.30
清州	朱德雲	28-2	642-5588	02.10.21
"	柳旼烈	812	855-8200	02.10.24
大邱	宋美齡	3 31-3		02.10.14
"	李東勳	33-2(210)	754-7912	02.10.30
"	李在教	33-2(210)		02.11.01
釜山	金永述	17 10-2	243-3737	02.10.11

月刊 法 曹

2002年 12月 1日 (51 12 , 通卷 555)

1964年 1月 1日 (00001)

發行人 編輯人：朴淙烈(法務室長)

主 幹：金永哲(法務審議官)

編纂實務責任者：丁鍾燮

發 行 處：法曹協會/電話：(02) 503-7108

住 所：○427-720 果川市 中央洞 1. 政府果川廳舍 1棟 322號

E-mail : bubjo@hanmail.net

對替計座：103739-31-000012

印 刷：成政企業/電話：(02) 571-5700

“BUP JO” is a monthly journal for lawyers, paralegals, legal officials, academics and anyone who works on legal matters.

It is published by the Lawyers Association, the chairman of which is the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非賣品]